

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2003. 12.

손 원 익

서 언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부의 노력이 기울여졌으며, 그 일환으로 기업의 경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무행정상의 정책수단이 사용되었다. 기업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지출을 기업의 비용으로 계상한 사례를 적발하여 세무당국에서 수정신고를 유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적 용도 지출에 대한 손비부인 사례가 크게 증가되어 기업이 지출하는 경비의 투명성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제고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적인 경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기준은 이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기업이 지출하는 경비 중의 한 항목인 접대비의 경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비자금사건과 과소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이후 접대비의 세제상 손금산입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세법개정이 이루어졌고, 1998년부터 2000년에 걸쳐 손금산입한도가 대폭 축소되었다. 세법개정 이후 기업의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율이 축소되어 온 것을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1997년 이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경영악화 때문에 접대비 지출이 축소된 효과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축소되는 추세에 있으나 접대가 이루어지는

유홍산업의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이로부터 사회적 성도덕의 상실, 성매매의 팽창 등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축소 요구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접대비 지출과 유홍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할 만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의 수행이 시급한 상황이며, 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접대비 관련 세제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원의 손원익 박사가 수행하였다. 본 연구가 수행되면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제의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접대비 지출과 유홍산업과의 관계도 규명되어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는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준 평가자에게 감사를 드리고, 본 연구의 수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송은주 주임연구원과 원고정리에 수고한 이현영 연구조원 및 출판담당자에게도 사의를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둔다.

2003년 12월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宋 大 熙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접대비 지출과 유흥산업의 관계 및 접대비 관련 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접대비 관련 조세제도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유흥산업 규모의 변화와 접대비 관련 세제개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흥산업으로 주점업만을 사용한 경우, 일반음식점업만을 사용한 경우 및 주점업 및 일반음식점업의 합계를 사용한 경우를 각각 고려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음식점업이 주점업보다 접대비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더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흥산업과 접대비비율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기 위해서는 유흥산업을 나타내는 변수로 종사자비중이 사업체비중보다 더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차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사업체비중과 접대비비율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주점업이 가장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점업 사업체비중의 경우 시차를 고려하면 접대비비율과 유흥산업규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유흥산업의 규모에 대한 접대비비율증가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한 회귀분석에서는 주점업의 사업체비중증가율에 대하여 1년의 시차를 가지고 접대비비율증가율이 정(+)의 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도 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 결과이지만 유흥산업의 다른 범위를 사용한 경우와 다른 변수를 사용한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크지 않

이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접대비 관련세제 개정의 결과인 손금산입한도의 변화율이 접대비비율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에는 손금산입한도증가율 외에 동종 업종 내 타기업수와 타기업 접대비비율의 평균값, 업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기업규모의 더미변수만을 포함한 회귀분석에서는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접대비비율증가율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으며 추정계수도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손금산입한도증가율의 경우 모든 분석모형에서 접대비비율증가율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손금산입한도의 증가폭이 커질수록 접대비비율의 증가폭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조정하는 조세정책이 기업의 접대비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기업접대비평균은 접대비의 경쟁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이며, 접대비비율증가율과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 또한 경쟁관계에 있는 타기업수가 증가할수록 접대비비율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동종업종 내에 접대비에 대한 경쟁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10% 수준에서 유의하다. 업종더미 변수의 경우 도소매업, 운수업, 전기·가스·증기업 등의 접대비비율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모형에 복리후생비지출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복리후생비비율증가율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서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기업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변칙회계처리의 가

능성은 소규모 기업이 상장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나 분석대상이 기업공개 의무가 있는 상장기업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유흥산업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제를 고려한다면 기업의 접대비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흥산업과 접대비지출 사이에 높은 수준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유흥산업의 축소를 위해서는 접대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상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접대비비율증가율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다는 회귀분석의 결과로부터 기업의 접대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제상으로는 손금산입한도의 축소가 정책당국이 취해야 할 정책방향이라는 정책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목 차

I. 서 론	15
II. 접대비 지출 현황 분석	18
III. 접대비 지출관련 세제	28
1. 현행 세제	28
2. 세제개정 내역	30
가. 1970년대	30
나. 1980년대	32
다. 1990년대	35
라. 2000년대	42
IV. 외국의 접대비 관련 제도	45
1. 미국	45
가. 직접관련 테스트(directly-related test)	48
나. 사업관련 테스트(associated test)	49
다. 50% 한도 적용	50
라. 장부기장 의무	51
2. 일본	51
3. 독일	56
가.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처리	56
나.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의 처리	56
다. 특별 행사와 관련된 접대비	57

라. 기타비용	59
4. 영국	59
5. 프랑스	59
6. 접대비 관련 세제의 국제비교	60
V. 접대비 규제와 유흥산업의 규모	66
1. 유흥산업의 규모	66
2. 연관관계 분석	70
가. 접대비지출과 유흥산업의 규모	70
나. 세계개편과 유흥산업의 규모	86
VI. 접대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분석	88
1. 접대비 규제와 지출 현황	88
2. 세계개편의 효과분석	91
3. 복리후생비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효과	95
VII. 요약 및 정책방향	100
1. 요약	100
2. 정책방향	103
가. 중·장기적 정책방향	103
나. 단기적 정책대안	105
참고문헌	108
부록 I. 접대비 명세서 양식	109
부록 II. 접대비 고시 관련 주요 문답사례	111

표 목 차

<표 II-1> 매출액 및 접대비 증가율 추이	9
<표 II-2> 상장기업의 매출액에 대한 접대비비율 분포	2
<표 II-3> 업종별 평균 접대비비율	2
<표 II-4> 상장기업의 업종별 평균 접대비지출액 및 손금한도초과액	26
<표 II-5> 접대비 한도초과율 분포	2
<표 III-1> 1979년 세법개정에 의한 접대비 손금한도액 비교	3
<표 III-2> 접대비 손금한도의 변경 추이	4
<표 IV-1> 접대비의 공제가능 판단 기준	4
<표 IV-2> 일본의 교제비 손금불산입 한도액 개정 연혁	4
<표 IV-3> 교제비 지출액 추이	5
<표 IV-4> 손금한도액 및 증빙의무 국제비교	8
<표 IV-5> 접대비 손금한도 개정의 한·미·일 비교	6
<표 V-1> 사업체수 증가율 추이	8
<표 V-2> 종사자수 증가율 추이	9
<표 V-3> 주점업 사업체 및 종사자의 비중증가율	2
<표 V-4> 종사자비중증가율(주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의 상관관계	74
<표 V-5> 사업체비중증가율(주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의 상관관계	74
<표 V-6> 일반음식점업 사업체와 종사자의 비중 및 증가율	5
<표 V-7> 일반음식점업 사업체 및 종사자의 비중증가율	7
<표 V-8> 사업체비중증가율(음식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의 상관관계	78
<표 V-9> 종사자비중증가율(음식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의 상관관계	79
<표 V-10> 유흥산업 사업체와 종사자의 비중 및 증가율	80
<표 V-11> 유흥산업(일반음식점업+주점업) 사업체 및	
종사자의 비중증가율	82
<표 V-12> 사업체비중증가율(주점업+음식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의 상관관계	83
<표 V-13> 종사자비중증가율(주점업+음식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의 상관관계	84
<표 V-14> 접대비비율증가율과	
사업체비중증가율의 상관관계	84
<표 V-15>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사업체증가율의 상관관계	86
<표 V-16>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종사자수증가율의	
상관관계	87
<표 VI-1> 접대비지출과 손금산입한도 증가율	88
<표 VI-2> 표본통계	90
<표 VI-3> 분석결과	90
<표 VI-4> 접대비비율 및 복리후생비비율 증가율	90
<표 VI-5> 표본통계	90
<표 VI-6> 분석결과	90

그림목차

[그림 II- 1] 연도별 매출액 및 접대비 증가율 추이	20
[그림 II- 2] 접대비 지출비율 증가율	20
[그림 V- 1] 주점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70
[그림 V- 2] 사업체비중(주점업)과 접대비비율	71
[그림 V- 3] 종사자비중(주점업)과 접대비비율	72
[그림 V- 4] 종사자비중증가율(주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	73
[그림 V- 5] 사업체비중증가율(주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	73
[그림 V- 6] 사업체비중(일반음식점업)과 접대비비율	76
[그림 V- 7] 종사자비중(일반음식점업)과 접대비비율	76
[그림 V- 8] 사업체비중증가율(일반음식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	77
[그림 V- 9] 종사자비중증가율(일반음식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	78
[그림 V-10] 사업체비중(일반음식점업+주점업)과 접대비비율	80
[그림 V-11] 종사자비중(일반음식점업+주점업)과 접대비비율	81
[그림 V-12] 종사자비중증가율(일반음식점업+주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	82
[그림 V-13] 사업체비중증가율(일반음식점업+주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	83
[그림 VI- 1] 접대비와 손금산입한도 추이	90
[그림 VI- 2] 접대비비율과 손금산입한도 추이	90

[그림 VI- 3] 집대비증가율 및 손금산입한도증가율	91
[그림 VI- 4] 집대비비율증가율과 손금산입한도증가율 추이	91
[그림 VI- 5] 집대비비율 및 복리후생비비율 추이	96
[그림 VI- 6] 집대비비율증가율 및 복리후생비비율증가율	97

I. 서 론

1996년 과소비와 비자금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을 때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당시 정책당국은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방안이라 판단하여 1997년에 접대비와 관련된 세제의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1997년 세제개편에는 비자금의 주요 재원이 되었던 기밀비를 2000년에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점진적으로 접대비 지출에 대한 손금산입한도를 축소함과 동시에 5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기업의 접대비지출 억제와 투명성제고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2002년 8월 독일의 TI(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 2002(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2)를 발표하였다. 전체 비교대상국 102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는 40위로 청렴지수 10점 중에서 4.5점을 받아 아직도 상대적 부패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가 경쟁국이라 생각하는 싱가포르는 5위(9.3점), 홍콩은 14위(8.2점), 대만은 29위(5.6)로 우리나라보다 청렴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중국의 경우 59위(3.5점)로 우리보다 청렴도가 낮으나 그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부패지수 2003(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3)에 의하면 싱가포르는 5위(9.4점), 홍콩은 14위(8.0점), 대만은 30위(5.7점)로 경쟁국의 경우 2002년과 비교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순위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0위로 순위가 10위나 떨어졌으며 점수도 4.3점으로 0.2점 하락하여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중국의 경우 66위(3.4점)로 작년보다 순위가 하락하였으나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좁혀지고 있어서 사회전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물론 부패와 접대와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접대가 규모, 장소, 대상 등의 측면에서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났을 때 접대를 뇌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부패와 접대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접대비지출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부패의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인식되고 있다.

금년 초 여성부의 의뢰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는 성매매와 관련된 성산업의 규모가 약 24조원으로 GDP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농림어업의 GDP 비중 4.4%와 유사한 규모라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물론 단순히 조사된 수치로 산업을 비교하는데는 문제가 있지만 성매매산업 규모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연구결과라 생각된다.

접대비와 비정상적 규모로 팽창된 성매매산업과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지만 과도한 접대비지출이 유흥산업의 팽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유흥산업과 성매매산업이 많이 중복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접대비와 성매매산업과의 연관성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접대비와 관련하여 각종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어왔다.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고안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판단을 위한 연구자료가 필수적이거나 접대비와 관련된 정책연구는 손원익(1997)에서 처음 수행되었고, 그 이후 접대비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개편 등 큰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

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1997년 세제개편 이후 기업의 접대비지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의 접대비지출현황을 분석한다. 현황분석에는 『기업경영분석』의 산업별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상장기업의 재무자료를 활용한다.

제3장에서는 접대비 관련 세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그 동안의 변화내역과 배경 등을 설명한다. 본 장에서는 관련세제를 구체적인 내용까지 정리하여 관심있는 연구자 및 기업의 실무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접대비 관련 정책수립에 시사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장에서는 접대비지출과 유흥산업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접대비지출과 유흥산업규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흥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및 사업체의 규모를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때문에 성매매산업이 아닌 유흥산업과 접대비와의 관계분석에 연구의 범위를 국한한다. 그러나 유흥산업과 성매매산업이 중복되는 특성 때문에 본 연구결과로부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제6장에서는 접대비 관련 세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접대비 관련세제의 개편은 접대비지출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의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접대비지출과 손금산입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또한 손금산입한도가 없는 복리후생비로 변칙적인 회계처리가 발생한다는 추측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도 수행한다.

제7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II. 접대비 지출 현황 분석

<표 II-1>은 1991~2002년 기간중 매출액 및 접대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것으로, 매출액의 경우 지난 12년간 평균 12%, 접대비는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접대비지출 증가율은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1997년 급격히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 접대비 지출이 전년대비 18.39% 감소하였다. 1999년 들어 접대비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였다가 2000년에는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1년과 2002년에는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하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액 대비 접대비비율(이하 접대비비율이라 함)의 경우 1996년까지는 0.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997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0.17%까지 하락하였으며, 1998년 이후 최근까지 소폭이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접대비비율증가율의 경우 1997년과 1998년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II. 접대비 지출 현황 분석 19

〈표 II-0〉 매출액 및 접대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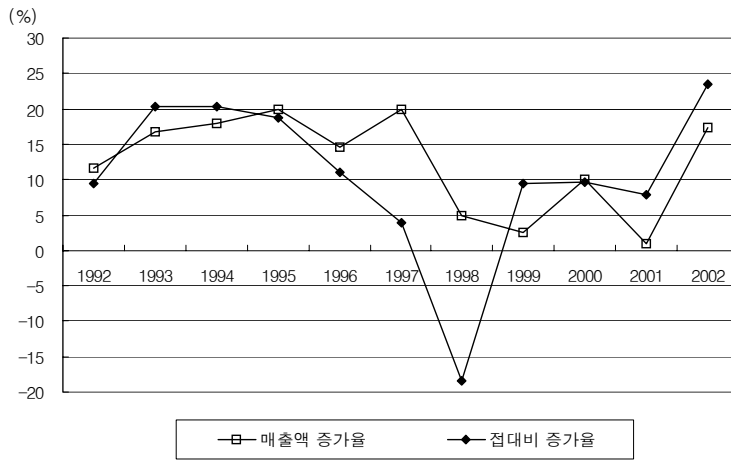
(단위: 10억원, %)

연 도	매출액		접대비		접대비비율	
	금액(A)	증가율	금액(B)	증가율	비율(B/A)	증가율
1991	345,862		863		0.25	
1992	385,987	11.6	944	9.39	0.24	-1.99
1993	450,850	16.8	1,136	20.34	0.25	3.03
1994	531,722	17.94	1,367	20.33	0.26	2.03
1995	637,275	19.85	1,624	18.8	0.25	-0.88
1996	729,764	14.51	1,802	10.96	0.25	-3.10
1997	875,156	19.92	1,871	3.83	0.21	-13.42
1998	918,798	4.99	1,527	-18.39	0.17	-22.26
1999	942,022	2.53	1,670	9.36	0.18	6.67
2000	1,036,694	10.05	1,831	9.64	0.18	-0.37
2001	1,045,653	0.86	1,975	7.86	0.19	6.94
2002	1,228,120	17.45	2,441	23.57	0.20	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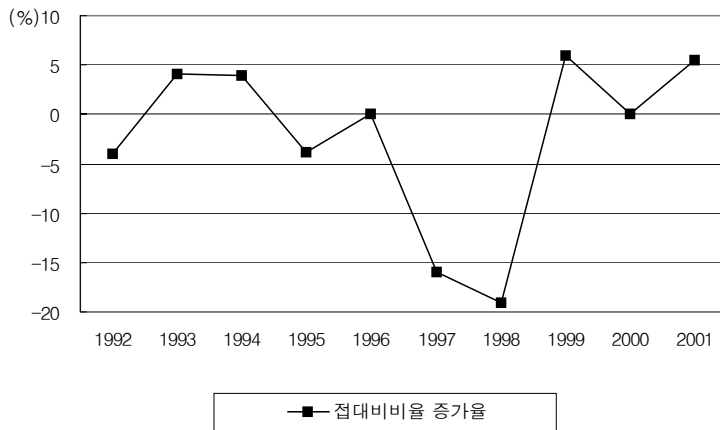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그림 II-1]은 매출액 및 접대비의 연도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1999년과 같이 정 반대의 모습을 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5년 이후 매출액 증가율이 접대비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1999년 이후부터는 접대비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1] 연도별 매출액 및 접대비 증가율 추이



[그림 II-2] 접대비비율 증가율 추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1995년 및 1998~2002년 기간의 접대비 지출 현황을 살펴본다. 현황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결산재무자료이며, 2002년 결산시점의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금융업을 제외한¹⁾ 상장기업 중 접대비지출액 또는 매출액이 누락된 기업과 결산기 변경이 있었던 기업을 제외한다. 2002년의 경우 전체 627개 재무자료 중 결산기 변경으로 인한 24개 재무자료를 제외하고, 접대비 금액이 0인 11개 재무자료를 제외한 592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같은 방법으로 각 연도의 재무자료 중 결산기를 변경한 기업과 접대비 및 매출액이 0인 재무자료를 제외한 후 대상기업 수는 1995년 584개, 1998년 579개, 1999년 577개, 2000년 579개, 2001년 582개이다.

1995년과 1998~2002년 기간의 상장기업 매출액에 대한 접대비비율은 <표 II-2>와 같다. 세제상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한도액이 축소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1998년까지는 기준금액(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에 일반기업의 경우 매출액을 고려하여 산출되고 중소기업은 자기자본과 매출액을 고려하여 산출되며 매출액 기준금액은 매출액 규모별로 0.06~0.3%의 비율이 적용되었다. 1999년부터는 일반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자기자본기준은 폐지되고 매출액기준으로만 산출되며 매출액기준비율은 0.04~0.3%에서 2000년부터 0.03~0.2%로 축소되었다.

<표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년도의 경우 접대비비율 0~0.1% 구간에 속하는 기업이 전체의 9.76%이었으나 1998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01, 2002년에는 각각 41.4%, 40.2%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접대비비율이 낮은 기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접대비비율이 매출액의 0~0.2%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도 매년 증가하여 1998~2001년 기간중에 56.83%, 60.32%, 64.42%, 66.15%로 나타나고

1) 금융업의 경우 상호신용금고, 증권투자신탁 등 각 기관별로 정하여진 모집권유비, 매출권유비의 명목으로 지출된 것에 한해서 일정범위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의 초과액은 접대비로 간주하므로 그 산출과정이 비금융업과 차이가 있음.

있어 1995년의 26.37%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0~0.1% 구간에 속한 기업 수의 변화만큼 큰 변화는 아니지만 접대비비율이 낮은 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접대비비율이 1%를 초과하는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 5.82%에서 1998년에 3.63%로 다소 낮아졌으나 이후 기간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4.39%까지 증가하였다. 즉, 전반적으로는 기업의 접대비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접대비비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접대비 지출 추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표 II-1〉 상장기업의 매출액에 대한 접대비비율 분포

(단위: 개, %)

접대비 지출 비율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기업 수	구성 비	기업 수	구성 비	기업 수	구성 비	기업 수	구성 비	기업 수	구성 비	기업 수	구성 비
0~0.1	57	9.76	172	29.71	192	33.28	220	38.00	241	41.41	238	40.20
0.1~0.2	154	26.37	157	27.12	156	27.04	153	26.42	144	24.74	133	22.47
0.2~0.3	113	19.35	102	17.62	87	15.08	82	14.16	72	12.37	88	14.86
0.3~0.4	78	13.36	52	8.98	59	10.23	41	7.08	31	5.33	36	6.08
0.4~0.5	62	10.62	32	5.53	26	4.51	21	3.63	26	4.47	27	4.56
0.5~0.6	32	5.48	17	2.94	15	2.60	19	3.28	15	2.58	22	3.72
0.6~0.7	27	4.62	9	1.55	7	1.21	10	1.73	18	3.09	10	1.69
0.7~0.8	15	2.57	4	0.69	5	0.87	4	0.69	3	0.52	4	0.68
0.8~0.9	8	1.37	8	1.38	5	0.87	4	0.69	6	1.03	1	0.17
0.9~1	4	0.68	2	0.35	3	0.52	2	0.35	2	0.34	7	1.18
1이상	34	5.82	21	3.63	22	3.81	23	3.97	24	4.12	26	4.39
계	584		579		577		579		582		592	

주: 2002년 결산시점의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1991~2002년 기간의 결산 재무자

료를 이용하였음.

자료: 한국신용평가 재무자료

업종별 상장기업 전체의 평균 접대비비율은 <표 II-3>에서 보는 바와 같다. 1995년 업종별 접대비비율은 어업 0.25%, 광업 0.2%, 제조업 0.42%, 전기·가스·증기업 0.19%, 건설업 0.17%, 도소매업 0.27%, 운수업 0.38%, 통신업 0.11%, 사업서비스업 0.59%,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산업 2.05%였다. 2002년에는 모든 업종에 있어서 접대비비율이 낮아졌는데 업종별로 보면, 어업 0.14%, 광업 0.09%, 제조업 0.3%, 전기·가스·증기업 0.06%, 건설업 0.12%, 도소매업 0.15%, 운수업 0.15%, 통신업 0.03%, 사업서비스업 0.35%,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산업이 0.97%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 기간에서 접대비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산업이지만, 이에 해당하는 기업은 1개이므로 업종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제외한 업종 중 일반적으로 접대비비율이 높은 업종은 사업서비스업과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업종은 대상 기간중 대부분 0.3%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2〉 업종별 평균 접대비비율

(단위: 개, %)

업종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기업 수	접대비 지출 비율	기업 수	접대비 지출 비율	기업 수	접대비 지출 비율	기업 수	접대비 지출 비율	기업 수	접대비 지출 비율	기업 수	접대비 지출 비율
어업	5	0.25	5	0.14	5	0.14	5	0.14	5	0.11	5	0.14
광업	2	0.20	2	0.17	2	0.14	2	0.10	2	0.10	2	0.09
제조업	456	0.42	453	0.34	450	0.31	452	0.28	454	0.36	460	0.30
전기·가스 증기업	11	0.19	11	0.08	11	0.07	11	0.05	11	0.05	11	0.06
건설업	42	0.17	42	0.11	41	0.10	42	0.10	43	0.11	43	0.12
도매 및 소매업	39	0.27	38	0.29	39	0.15	38	0.13	37	0.15	41	0.15
운수업	16	0.38	15	0.18	16	0.20	16	0.18	16	0.14	16	0.15
통신업	3	0.11	3	0.09	2	0.03	2	0.02	2	0.03	2	0.03
사업서비스업	9	0.59	9	0.37	10	0.32	10	0.35	11	0.44	11	0.35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	2.05	1	3.78	1	7.43	1	8.81	1	12.12	1	0.97
합계/평균	584	0.39	579	0.31	577	0.29	579	0.27	582	0.34	592	0.27

주: 2002년 결산시점에서 성장기업을 기준으로 1991~2002년 기간의 결산 재무자료를 이용하였음.

자료: 한국신용평가 재무자료

실제 기업이 현행 세제에 의한 손금산입한도액을 어느 정도 초과하여 지출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각 연도의 적용세법에 의한 한도 초과액을 산출하였다. 한도초과율이란 접대비 지출액에서 한도초과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표 II-4>에서는 업종별 평균 접대비, 평균 손금산입한도액, 평균 한도초과액을 이용하여 한도초과율을 산출하였다. 한도초과율을 보면 1995년의 경우 어업과 사업서비스업을 제외한 8개의 업종에서 접대비 지출이 손금한도액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세법상 인정하는 손금한도가 기업들이 실제로 지출하는 접대비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998~2000

년 기간에는 매년 접대비 손금한도가 축소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는데 동 기간의 한도초과율을 보면, 1998년에는 전기·가스·증기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통신업의 5개 업종이 한도에 미달하였고, 1999년에는 전기·가스·증기업, 도매및소매업, 통신업의 3개 업종, 2000년에는 전기·가스·증기업과 통신업의 2개 업종만 한도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2년 기간중에는 세제상 손금한도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에는 전년도와 달리 광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서 접대비 지출이 한도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2년에 전 산업이 평균적으로 매출액과 접대비가 크게 증가한 반면, 광업의 경우 오히려 접대비가 감소하였으며 도매및소매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에 따른 손금한도의 증가폭이 접대비 증가폭을 상회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표 II-4〉 상장기업의 업종별 평균 접대비지출액 및
손금한도초과액

(단위: 백만원, %)

업종	1995				1998				1999				2000				2001	
	접대비	손금한도	한도초과액	한도초과율	접대비	손금한도	한도초과액	한도초과율	접대비	손금한도	한도초과액	한도초과율	접대비	손금한도	한도초과액	한도초과율	접대비	손금한도
어업	409	386	23	5.62	294	248	46	15.65	275	178	97	35.27	219	126	93	42.47	138	102
광업	164	234	-70	-42.68	146	143	3	2.05	122	122	0	0.00	97	89	8	8.25	118	106
제조업	543	625	-82	-15.10	371	357	14	3.77	396	266	130	32.83	413	223	190	46.00	402	223
전기·가스 증기업	623	1,925	-1302	-208.99	542	1249	-707	-130.44	386	934	-548	-141.97	413	859	-446	-107.99	468	954
건설업	771	934	-163	-21.14	472	514	-42	-8.90	583	374	209	35.85	633	274	359	56.71	493	301
도매및소매업	557	1,801	-1244	-223.34	618	1597	-979	-158.41	615	1129	-514	-83.58	373	329	44	11.80	437	416
운수업	768	974	-206	-26.82	629	759	-130	-20.67	681	514	167	24.52	618	413	205	33.17	450	431
통신업	1,274	4,133	-2,859	-224.41	1,456	2,692	-1,236	-84.89	2,306	2,858	-552	-23.94	1,683	2,469	-786	-46.70	2,339	2,719
서비스업	793	449	344	43.38	670	256	414	61.79	607	165	442	72.82	790	137	653	82.66	637	127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77	78	-1	-1.30	112	50	62	55.36	129	23	106	82.17	195	22	173	88.72	139	20

주: 산업별 평균 접대비와 손금한도로 한도초과액과 한도초과율을 산출하였음.
자료: 한국신용평가 재무자료

다음의 <표 II-5>는 접대비한도초과율의 각 계급별 기업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도금액에 미달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기업은 전체 기업 중 각 연도에 62.15%, 53.19%, 33.1%, 25.04%, 27.66%, 26.02%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접대비 지출액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세법상 인정하는 손금산입한도액 기준이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계속 축소되었으므로 한도액 감소로 인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손금산입한도액을 상당부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상장기업 중 26% 정도는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액을 다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II-4> 접대비 한도초과율 분포

(단위: 개, %)

	1995		1998		1999		2000		2001		2002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90-100	1	0.17	1	0.17	6	1.04	18	3.11	15	2.58	20	3.38
80-90	7	1.20	9	1.55	23	3.99	35	6.04	41	7.04	46	7.77
70-80	11	1.88	22	3.80	37	6.41	64	11.05	58	9.97	58	9.80
60-70	14	2.40	21	3.63	44	7.63	68	11.74	61	10.48	77	13.01
50-60	22	3.77	29	5.01	40	6.93	59	10.19	69	11.86	65	10.98
40-50	27	4.62	39	6.74	60	10.40	53	9.15	46	7.90	40	6.76
30-40	26	4.45	27	4.66	49	8.49	44	7.60	35	6.01	43	7.26
20-30	30	5.14	47	8.12	60	10.40	38	6.56	41	7.04	34	5.74
10-20	39	6.68	47	8.12	35	6.07	33	5.70	27	4.64	27	4.56
0-10	44	7.53	29	5.01	32	5.55	22	3.80	28	4.81	28	4.73
-50-0	165	28.25	159	27.46	104	18.02	71	12.26	77	13.23	78	13.18
-50 미만	198	33.90	149	25.73	87	15.08	74	12.78	84	14.43	76	12.84
계	584	100	579	100	577	100	579	100	582	100	592	100

주: 2002년 결산시점에서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1991~2002년 기간의 결산 재무 자료를 이용하였음.
 자료: 한국신용평가 재무자료

Ⅲ. 접대비 지출관련 세제

1. 현행 세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접대 및 교제 등을 위한 비용 또는 사례금이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접대·향응·위안·선물기증 등 접대 행위로 지출된 모든 금품의 가액을 말한다. 기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급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 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과 일반 상거래 관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매출할인 장려금, 자산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교제비용 등이 있다.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기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접대비는 판매장려금, 거래처에 무상제공하는 물품,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등과 그 성격상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 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지만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본다.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매출할인으로 보지만,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된다.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 중 1회 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한다. 예외적으로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 매출채권의 임의포기금액, 법인이 자기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제공한 접대비는 신용카드 사용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유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한다. 접대비 손금한도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다.

$$1,200\text{만원(중소기업은 } 1,800\text{만원)} \times (\text{당해사업연도의 월수}/12) + (\text{매출액} \times \text{적용률})$$

매출액별 적용률은, 매출액 100억원 이하분은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분은 0.1%, 500억원 초과분은 0.03%이다.

그러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거나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0%만을 한도액으로 본다.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은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영업(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 등은 제외),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등이다(조특영 제130조 2항, 조특규칙 제57조 2항). 또한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위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70% 상당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조특법 제136조 2항).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한다.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건설가계정·고정자산 등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은 동 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접대비와 합산하여 시부인 계산한다.

2. 세제개정 내역

기업의 접대비는 어느 나라나 그 범위와 손금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 접대비란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사회적 여건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되어 왔다. 90년대 후반부터 기업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 시킴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손금한도를 상당히 축소해 왔다. 다음은 7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접대비와 관련된 세제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1970년대

1979년 세법개정 이전까지는 기초금액 100만원에 자본금(50억원을 한도로 함)의 2%와 수입금액의 0.4%의 합계액을 손금산입 한도로 하였으나 기업의 과도한 소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대비의 손금인

정 한도를 축소하였다. 기초금액을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대신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0.2%로 적용비율이 낮아졌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수입금액의 비중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됨으로써 오히려 한도가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축소되었다.

$$\text{손금한도액} = 300\text{만원} + \text{자본금}(50\text{억원 한도}) \times 2\% + \text{수입금액의 } 0.2\%$$

세법개정에 따른 자본금 규모별 한도액 규모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매출액을 자본금의 7배로 가정하여 개정 전·후의 한도액을 산출한 것이 <표 III-1>이다. 예를 들어 자본금 규모가 5천만원인 기업은 개정 전의 한도액에서 개정 후의 한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38.2%로 오히려 한도가 38% 증가하였으나 자본금 규모가 5억원인 기업의 경우는 20% 감소하였으며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감소폭은 크게 나타난다.

<표 III-0> 1979년 세법개정에 의한 접대비 손금한도액 비교

(단위: 천원, %)

자본금	개정전	개정후	비율 ¹⁾
50,000	3,400	4,700	138.2
500,000	25,000	20,000	80.0
2,000,000	97,000	71,000	73.2
5,000,000	241,000	173,000	71.8
8,000,000	325,000	215,000	66.2
10,000,000	381,000	243,000	63.8
15,000,000	521,000	313,000	60.1
20,000,000	661,000	383,000	58.0

주: 수입금액은 자본금의 7배로 가정하였음.

1) 비율=(개정 후 손금한도액/개정 전 손금한도액)×100

나. 1980년대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접대비의 한도금액은 자본금과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의 실제 접대비 지출 실태와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자본금 규모나 수입금액 규모가 큰 대기업은 손금인정 한도액이 상당히 큰 규모이므로 접대비 명목의 소비성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가 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오히려 접대비 지출비중이 큰데도 불구하고 한도액이 적어 손금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1981년 세법 개정에서는, 대기업은 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를 축소하여 과도한 접대비 한도를 이용한 비용의 변칙적인 처리를 규제하는 한편 중소기업은 그 한도를 확대하여 접대비 과소인정으로 인한 기업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정하였다.

접대비 한도는 기초금액이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자본금 기준금액은 종전과 같이 2%로 하였다. 수입금액기준은 0.2%에서 0.1%로 축소하였으나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종전과 같이 0.2%를 적용함으로써 접대비 지출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한도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시행령 제43조).

$$\text{손금한도액} = 600\text{만원} + \text{자본금}(50\text{억원 한도}) \times 2\% + \text{수입금액} \times 0.1\%(\text{중소기업은 } 0.2\%)$$

또한 기밀비의 손금인정 한도액이 자본금(50억원 한도)의 1%와 수입금액의 0.1%의 합계액이었으나 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기밀비의 한도액도 자본금(50억원 한도)의 1%와 수입금액의 0.05%로 축소되었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text{기밀비 손금한도액} = \text{자본금}(50\text{억원 한도}) \times 1\% + \text{수입금액} \times 0.05\%$$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사회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경
우에는 위의 한도 내에서는 기업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임을 증
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여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
된 것으로 간주하여 접대비로 인정한다. 따라서 기밀비한도를 초과하
여 지급된 금액이라도 그 지급된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
을 당해 법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접대비로 인정받아 접대
비의 한도 내에서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
출사업이나 해외건설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
한 해외접대비는 접대비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으로써 국내접대비 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서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외화수입금액의 일정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1984년 세법개정에서는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중 신용카드에 의해
거래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
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3). 이는 신용카드로 지출하지 않은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행위가 발
생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인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
는 것이다. 제출대상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
상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법인이며, 수입금액이란 영업수
익을 기준으로 한다. 제출시기는 1월부터 6월 사이에 발생한 것은 7월
31일까지, 7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한 것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연 2회 제출하도록 한다. 접대비의 손익귀속시기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며 1984년 10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접대비지출명세서는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므로 여러 개의 사업장, 지점,
공장 등이 있는 경우 납세지소관세무서인 본점소재지 소관세무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동안 해외접대비는 한도액 제한없이 전액 손금인정하고 있으며

로 국내접대비한도액(600만원+자본금의 2%+수입금액의 0.1%) 계산 시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의 50%(또는 해외접대비×1,000×50%) 상당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방법에 의하여 해외접대비에 대하여는 간접적으로 규제하여 왔다.

그러나 1985년도 세법개정에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동법 제26조의 해외사업 포함)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60%(또는 해외접대비×1,000×60%)를 국내접대비 한도액 계산기준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그만큼 국내 접대비 한도액이 축소되었으며 이는 해외접대비에 대한 규제를 간접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시행규칙 제18조의 2). 또한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기준을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서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낮춤으로써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법인이 확대되었다. 이는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986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였다. 그리고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기한을 각각 한 달씩 연장하여, 1월부터 6월까지의 발생분은 8월 31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발생분은 익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1987년 세법개정에서는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 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하여 그 기준금액을 또 한 번 낮춤으로써 제출대상 법인의 범위가 제도신설 당시에 비해 상당히 확대되었다(부칙 제18의 3).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자료처리량을 축소하여 인력을 절감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접대비를 지출하더라도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을 건당 5만원 이하에서 건당 10만원 이하로 인상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인을 제출대상에 포함시키되 소액접대비 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1990년대

1990년 세법개정에서는 소비성서비스업의 확산을 억제하고 소비성 경비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의 손금인정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접대의 필요성이 적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도 축소하였다. 소비성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0.05%를 적용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에 대해 0.1%를 적용하였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를 기초금액 600만원, 자본금의 2%, 매출액의 0.05%의 합계액으로 축소하였는데 소비성 서비스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매출액에 대하여만 손금인정한도액이 축소되었다.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한도

$$= 600\text{만원} + \text{자본금}(50\text{억원 한도}) \times 2\% + \text{수입금액} \times 0.05\%$$

소비성서비스업이란 ① 오락서비스업 ② 음식점업·숙박업 ③ 여행업 ④ 전세버스운송업 ⑤ 관광유람선업 ⑥ 목욕장업 및 안마업과 같은 업종을 말하며, 부동산업(시행령 제43조 제2항)이란 부동산임대업·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단, 주택신축매매업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 법인을 제외한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²⁾(특약판매자는

2) 특수관계 있는 자란 ① 출자자와 그 친족 ②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함)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제외)와의 거래를 말한다.

접대비 중 지출증빙이 없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밀비의 손금한도액을 일반기업에 한해 자본금의 1%와 매출액의 0.035%(중소기업은 0.05%)로 조정함으로써 종전의 약 70% 수준으로 축소하였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text{기밀비 손금한도액} = \text{자본금(50억원)} \times 1\% + \text{수입금액} \times 0.035\% (\text{중소기업 } 0.05\%)$$

신용사회의 정착과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한 금액이 일정 비율에 미달할 경우 접대비 중 미달 비율만큼 손금부인하도록 하였고 신용카드 사용 미달시 손금부인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text{신용카드 사용비율미달로 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 \\ & = \text{접대비지출액} \times (\text{기준사용비율} - \text{신용카드 사용비율}) \end{aligned}$$

위 산식에서 접대비지출액이란 접대비지출액(기밀비와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 등의 한도초과액을 포함한다) 중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손금인정한도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신용카드 사용비율이란 접대비지출액에서 신용카드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신용카드사용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③ 출자자 또는 ①, ②의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④ ③ 또는 ⑥의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수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⑤ 당해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⑥ ①또는 ②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함)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의하여 계산한 손금산입한도 내의 금액부터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기준사용비율은 일반기업 40%, 중소기업 30%이나 1991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준사용비율은 일반기업 35%, 중소기업 25%가 적용되었다.

1992년에는 관광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관광호텔업과 일반여행업 등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각종 규제를 배제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국민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일반여행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하였다(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6항 제7항).

1981년 세법개정시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접대비지출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손금한도액 산출시 대기업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은 손금한도가 적어서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1993년 세법개정시 중소기업에 한해 손금한도 기초금액을 1,8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매출액의 적용비율도 중소기업 0.3%, 일반기업 0.15%로 조정하여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가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었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시행령 제43조).

$$\text{중소기업의 손금산입 한도} = 1,800\text{만원} + \text{자본금}(50\text{억원 한도}) \times 2\% + \text{매출액} \times 0.3\%$$

$$\text{일반기업의 손금산입 한도} = 600\text{만원} + \text{자본금}(50\text{억원 한도}) \times 2\% + \text{매출액} \times 0.15\%$$

199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관련사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하고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대상에 육설 등을 부설한 미용실업을 추가하였다(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의 2).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된 관광관련사업으로는 ①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³⁾ ②관광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전문 및 종합휴양업 ③체육관운영업 중 체육도장업 ④여행알선업, 전세버스운송업, 관광유람선업 ⑤목욕장업 중 일반목욕장업이 있다. 유흥업소 등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도모하고 신용사회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접대비 지출의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을 일반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신용카드가맹점의 보급이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소재기업⁴⁾은 중소기업과 같이 30%를 적용받도록 하였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2항, 시행령 제43조). 그러나 접대비지출이 많지 않은 영세법인, 즉 연간 접대비 지출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의무사용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1994년에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 양성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시 세금계산서 거래분도 신용카드 사용분에 포함시켜 계산하도록 하였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1995년 세법개정에서는 기업의 불필요한 경비지출이 고비용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지출을 억제하여 기업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하향조정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업경영 여건상 접대비 손금한도액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한도액이 증가되도록 하고, 대기업에 대하여는 오히려 축소되도록 조정하였다. 지금까지는 수입금액에 단일비율(일반기업 0.15%, 중소기업 0.3%)을 적용함에 따라 수입금액이 늘어나면 접대비 손금한도도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매출액이 큰 대기업에는 한도액이 상당히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용비율을 차등화하여 수입금액이 늘

3) 관광호텔업, 국민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 해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4) 조감법시행령 제38조의 대도시권(조감법시행령(별표1)의 대도시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외의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

어날수록 손금한도증가율이 체감되도록 개선하였다. 일반기업·중소기업 구분없이 기초금액 2,400만원에 자기자본⁵⁾(50억원 한도)의 2%와 수입금액의 0.1~0.3%(100억원 이하분 0.3%,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분 0.2%, 1천억원 초과분 0.1%)의 합계액을 손금산입 한도로 하였다(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전액 손금인정하던 해외접대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라 대외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어 이를 폐지하고 일반접대비에 통합하였다. 따라서 매출액기준 계산시 외화수입금액의 60%(중소기업 50%)를 매출액에서 제외하던 규정도 폐지되었다.

그동안 신용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이용확대를 통해 유흥업소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고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왔다. 1995년의 세법개정으로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이 또 확대되었으며,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역별 분포실태를 감안하여 지역별로 의무비율을 차등화하였다. 일반기업은 50%,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은 30%이던 의무비율을 일반기업·중소기업 구분없이 지역별로 차등화하였다. 또한 법인의 납세지 또는 접대비 사용지역 중 법인이 선택한 기준에 의해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납세지 기준에 의할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납세지(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소재기업은 75% 이상, 광역시 소재기업은 60% 이상, 시지역 소재기업은 50% 이상, 군지역 소재기업은 40% 이상이고 사업연도중에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 전·후의 소재지역의 비율 중 작은 비율을 적용하였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996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한하여 50%를 적용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도농통합시의 읍·면

5) 1994년 세법개정으로 자본금 기준에서 자기자본 기준으로 변경되었음.

지역과 광역시의 군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은 군지역 소재기업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접대비 사용지역 기준에 의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총액을 사용지역별로 구분한 후 각각의 비율을 적용하여 미달지역분만 손금부인하도록 하였는 바, 각각의 사용지역별로 적용할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은 서울시지역분은 75% 이상, 광역시지역분은 60% 이상, 시지역분은 50% 이상, 군지역분은 40% 이상, 외국에서의 사용분은 당해법인의 본점소재지 지역의 비율(40~75%)을 적용한다. 각 사용지역별 접대비 손금산입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다.

각 사용지역별 접대비 손금산입액

$$= \text{접대비 손금산입액(전체)} \times \frac{\text{사용지역별 접대비 지출총액}}{\text{접대비 지출총액}}$$

이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액에 사용지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밀비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동 기밀비를 안분하여 각 사용지역별 접대비 손금산입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기밀비를 각 사용지역별로 안분하는 방법은 당해법인의 접대비 지출총액(동 기밀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각 사용지역별 접대비 지출총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1996년 세법개정에서는 기업의 건전한 접대관행 정착과 소비절약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조정하였다. 기본 금액은 2,400만원을 유지하되 일반기업에 한해 자기자본 적용비율을 1%로 축소하였고 매출액에 0.1%를 적용하던 구간이 1,00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기준 금액이 낮아졌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면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인 기업은 개정으로 인한 손금한도액에 변화가 없으나 일반기업이면서 매출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은 한도액

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유흥업소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유도하고 접대비 사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직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도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1997년 세법개정에서는 19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에 걸쳐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개정되었다. 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 축소는 기업의 불필요한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한 조치이다.

기초금액 2,400만원을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으로 축소하고 이는 1998년 이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현재 자기자본 기준 금액은 1998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에 한해 자기자본의 1%를 한도액에 포함하되 1999년 이후부터는 한도액 기준금액에서 제외되었다. 매출액기준은 1998년에는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06%로, 1999년에는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분에 대해 0.15%,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04%로 축소하였다. 2000년부터는 100억원 이하분 0.2%,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분에 대해 0.1%,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03%로 축소함으로써 전 기업의 매출액 기준금액이 크게 감소되었다.

또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접대비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적 경비로 이용할 소지가 큰 기밀비의 손금인정한도를 축소하였다. 자기자본 기준금액은 1998년부터 제외되고, 현재 접대비 손금한도의 3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1998년에는 접대비 손금한도의 20%, 1999년에는 10%, 2000년에는 0%로 축소시켜 2000년 이후에는 기밀비의 손금산입을 폐지하도록 하였다.

민간기업과는 달리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공공법인의 경우 접대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감안하여, 공공법인의 손금한도액을 일반법인의 70%로 축소하였다. 이는 조감법상의 공공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1998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었다.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최근 신용카드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1997년중에 신용카드가맹점 공동관리망 구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시 80%, 광역시 70%, 시지역 60%, 군지역 50%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1998년 세법개정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의무를 더욱 강화하였고 기밀비제도를 폐지하였다. 1회 접대비 5만원 이상 지출시 100%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거래분에 적용되던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제도도 폐지하였다.

1999년부터는 기밀비 손비인정한도를 접대비한도액의 10%로 축소하고 2000년부터는 폐지하였다. 1999년 세법개정에서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복권제도 도입을 계기로 법인명의로의 신용카드사용액만을 접대비로 손비인정함으로써 사적 경비의 부당경비처리 억제 등 기업경비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근로소득공제 및 법인의 비용으로 이중처리되는 등의 남용소지를 축소하였다.

라. 2000년대

2001년 세법개정에서는 1회 접대비지출액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시에만 손비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제도를 폐지하였다.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의 경우 접대비 손금한도 계산시 매출액기준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20%만을 한도로 하였으나 이러한 규정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하였다.

2003년 4월 세정혁신추진위원회 혁신과제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향락성 접대비에 대한 규제방안이 발제된 후 2003년 6월 건당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이후 2003년 12월 30일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지출증빙의 기록과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이 신설되었다. 2004년 1월에 발표된 국세청장의 고시로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지출에 대하여 납세자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 제도는 2004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만일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기준을 적용한다.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은 증빙서류의 뒷면이나 당해 증빙서류를 첨부한 용지 여백에 ① 접대목적, ② 접대자의 부서명 및 성명, ③ 접대 상대방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부서명 및 성명(접대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법인 등과 같이 위에 명시한 방법으로 지출내역을 기록·보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접대비 명세서』 또는 정규영수증 기재내역(일자, 금액, 접대장소)과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별도 양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⁶⁾.

다음 <표 Ⅲ-2>는 1990년대 접대비 손금한도와 관련된 개정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6) 명세서 양식 및 접대비 관련 주요 문답사례는 부록을 참조.

〈표 III-1〉 접대비 손금한도의 변경 추이

적용 연도	기본금액	자본금 기준비율 ¹⁾	매출액 기준비율	신용카드사용 의무비율	해외 접대비	기밀비 손비한도
1992 ~ 1993	일반기업: 600만원 중소기업: 1,200만원	2%	일반기업: 0.1% 중소기업: 0.2%	일반기업: 40% 중소기업 및 지방 소재기업: 30%	전액 손금 인정 ²⁾	자본금×1%+매출액× 0.035%(중소 0.05%)
1994 ~ 1995	일반기업: 6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	2%	일반기업: 0.15% 중소기업: 0.3%	일반기업: 50% 중소기업 및 지방 소재기업: 30%	전액 손금 인정	
1996	2,400만원	2%	100억원 이하: 0.3% 100~1,000억원: 0.2% 1,000억원 초과: 0.1%	특별시 지역: 75% 광역시 지역: 60% 시 지역: 50% 군 지역: 40%	일반 접대비 로 통합	
1997	2,400만원	일반기업:1% 중소기업:2%	100억원 이하: 0.3% 100~500억원: 0.2% 500억원 초과: 0.1%	상동	상동	자기자본의 1%+매 출액의 0.035%(중소 0.05%)
1998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	일반기업:0% 중소기업:1%	100억원 이하: 0.3% 100~500억원: 0.2% 500억원 초과: 0.06%	특별시 지역:80% 광역시 지역:70% 시 지역:60% 군 지역:50%	상동	①,② 중 적은 금액: ①접대비손비인정한 도의 20% ②자기자본의1%+매 출액의 0.035%(중소 0.05%)
1999	일반기업: 1,200만원 중 소 기 업 : 1,800만원	0%	100억원 이하: 0.3% 100~500억원: 0.15% 500억원 초과: 0.04%	상동	상동	접대비한도액의 10%
2000	일반기업: 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	0%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상동	상동	폐지

주: 1) 1994년까지는 자본금, 1995년부터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며, 자본금 및 자기자본 모두 50억원을 한도로 함.

2) 매출액기준 계산시 외화수입금액의 60%(중소기업 50%)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였으나 1995년 세법개정시 이 규정을 폐지하였음.

자료: 재정경제부, 『간추린 개정세법』, 각 연도.

IV. 외국의 접대비 관련 제도

1. 미국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접대비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1986년 레이건 행정부의 세계개혁으로 1987년부터는 영업활동에 직접 관련된 접대비, 영업활동에 부수되어 통상 필요한 접대비일지라도 지출액의 80%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등 접대비의 비용처리 요건이 강화되었다.

또한 1993년 클린턴 행정부의 세계개혁으로 인해 1995년부터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접대비라 할지라도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된 것과 사업 목적의 회의 직전·후에 지출되는 것에 한하여 지출액의 50%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목적으로 제공되는 기부도 1인당 연간 25달러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접대비로서 손금산입하려면 기업의 고객 또는 근로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며, 세부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IV-0〉 접대비의 공제가능 판단 기준

일반규정	- 직접관련 테스트 또는 영업관련 테스트에 부합한다면, 접대를 위해 정상적이고 필요한 비용은 공제
용어정의	- 접대 : 고객에게 접대 및 오락을 제공 - 정상적인 비용 :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 필요한 비용 : 사업상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더라도 도움이 되고 지출할 만한 비용
조 건	- 직접관련 테스트 : 접대의 장소 및 목적, 접대자의 참석여부 및 사업상 기대를 고려 - 영업관련 테스트 : 사업의 유관성 및 접대시점을 고려
기타규정	- 사치스럽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은 공제 부인 - 지출액의 50%만 공제

일반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직접관련 테스트 또는 영업관련 테스트에 부합한다면, 고객이나 근로자에 대한 접대를 위해 정상적이고 필요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동 규정에서 접대란 고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접대 및 오락을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정상적인 비용이란 해당 사업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한다. 필요한 비용이란 사업상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더라도 도움이 되고 지출할 만한 비용을 말한다. 접대비가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직접관련 테스트 또는 영업관련 테스트에 부합해야 한다. 직접관련 테스트에 부합하려면 접대가 명백히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접대의 주 목적이 사업을 수행하는 활동이어야 하고 접대를 하는 자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수익발생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 이상이거나 사업상 특정 혜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영업관련 테스트에 부합하려면 접대가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사업관련 논의 직전·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 외의 규정으로는, 만일 출장비로서 식사비를 청구했다면 접대비에 해당되는 식사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상황적으로 볼 때 사치스럽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접대비라도 지출액의 50%만 공제할 수 있다.

접대비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세부적으로 보면 구분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실질적으로 흔히 지출되는 비용 중 다음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서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비용이다.

① 클럽 회비 : 사업 또는 오락을 위한 클럽회비(가입비 포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규정은 클럽의 운영 목적이 회원 및 고객을 위한 오락활동의 수행이든 회원 및 고객에게 오락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즉, 클럽의 목적과 활동은 회비의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무관하다. 예를 들면, 컨트리클럽, 골프클럽, 항공사클럽(airline club), 호텔클럽 등에 지출한 회비는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② 오락시설 : 일반적으로 오락시설의 보유 및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나 전기료,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와 감가상각비 모두를 포함한다. 오락시설이란 직접 소유하거나 임대한 설비 및 오락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요트, 사냥 숙소, 낚시 캠프, 수영장, 테니스코트, 볼링장, 자동차, 비행기, 아파트, 호텔, 별장 등이다.

③ 접대성 식사비용 : 일반적으로 접대성 식사비용이라도 납세자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식사가 사업관련 회의 전·후에 있었고 사업수행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④ 사업상 필요한 증정품 : 증정품은 1인당 연간 \$25로 공제액이 제한된다. \$4 이하의 광고성 물품과 전시용 선반 및 기타 판매촉진용 물품은 증정품에서 제외된다.

접대비란 일반적으로 접대 및 오락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 사회단체, 건강클럽, 스포츠클럽, 극장, 스포츠행사, 요트, 사냥, 낚시, 휴가 등지에서 손님 접대이다. 회의 또는 고객이나 고객의 가족에게 제공되는 식사, 호텔숙박, 자동차와 같은 가족을 위한 접대도 포함한다. 접대의 일부에 속하든 접대 그 자체

이든 식사 제공은 접대비에 포함된다. 식사비용은 음식비, 음료비, 세금, 식사를 위한 교통비를 포함한다. 접대와 관련된 식사가 되려면,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고용자가 식사에 참석해야 한다. 사업 종류는 특정 행동이 접대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 요인이다. 예를 들면, 납세자가 의상디자이너이고 고객을 위해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이는 패션쇼를 개최한다면, 그 쇼는 일반적으로 접대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패션쇼는 특정 사업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납세자가 가전제품 납품업자이면서 도매상들의 배우자를 위해 패션쇼를 개최한다면 그 쇼는 접대에 해당된다.

가. 직접관련 테스트(directly-related test)

접대비가 직접관련 요건을 만족하려면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한다.

첫째, 사업과 오락이 결합된 경우 주 목적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납세자가 오락활동에 참석해야 한다. 셋째,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소득 또는 기타 사업상의 혜택 이상을 얻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냥이나 낚시 또는 요트를 즐기며 사업과 오락이 결합될 때 사업이 주 목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일 납세자가 사업이 주 목적임을 입증하더라도 오락시설의 사용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

납세자는 사업의 성격과 오락을 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는 이유를 포함한 모든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오락보다 사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만일 사업상의 논의가 오락행위에 단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접대비는 직접관련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만일 오락행위가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그 비용은 사업과 직접관련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음의 상황은 명확히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접대 사례이다.

- ① 제품의 전시나 제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영업권이 발생하는 경우 접견실에서 이루어지는 접대

② 제품 판매에 있어서 주로 가격 할인인 경우

③ 납세자와 접대를 받는 자간에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접대

만일 납세자가 그곳에 없거나 납세자가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접대비는 일반적으로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

① 나이트클럽, 극장, 스포츠 행사 중의 회의나 토론

② 칵테일파티 등의 행사에서의 회의나 토론

③ 컨트리클럽, 골프클럽, 휴양지 등의 장소에서 사업 관계인이 아닌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모임

나. 사업관련 테스트(associated test)

직접관련 테스트를 만족하지 않더라도 사업관련 테스트를 만족하면 접대비로서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접대비가 사업관련 테스트를 만족하려면 납세자는 접대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관련 논의 직전·후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사업목적을 가지고 지출된 것임을 입증한다면, 해당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 그 목적은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 사업을 증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사업관련 토론인지 아닌지는 각 사례별로 다를 수 있다. 납세자가 회의, 협상 기타 소득 및 부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사업상의 토론으로 보지 않는다.

회의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될 필요는 없으나 납세자는 식사 및 접대행위가 사업상의 토론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접대보다 토론에 더 많은 시간을 꼭 할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식사 또는 접대활동을 하는 시간 내내 사업관련 토론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사업체 또는 전문가 집단에서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관련 회의로 본다. 그러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이유가 납세자의 장래 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접대가 사업관련 토론이 있던 날 행해진다면, 그것은 사업관련 토론 직전·후에 있던 것으로 본다. 만일 접대와 사업관련 토론이 동일한 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납세자는 업무관련 테스트에 부합하는지 입증하기 위해 각 사례별로 실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은 장소, 날짜, 토론기간 등이다.

다. 50% 한도 적용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사업과 관련한 식사비 및 접대비의 50%만 공제할 수 있다. 50% 공제한도는 사업상 출장중이거나 사업장 및 기타 장소에서의 고객에 대한 접대 또는 사업상 개최하는 연회 및 회의 도중에 발생하는 식사비 및 접대비에 적용된다. 50% 공제한도가 적용되는 접대비에 포함되는 비용은 식사비와 접대비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세금, 나이트클럽의 입장료, 저녁식사나 칵테일파티를 위한 장소의 임대료, 스포츠 행사장에서의 주차비용 등이다. 그러나 접대장소까지의 왕복 교통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접대비는 다음과 같다.

- ① 종업원이 접대비를 지출하고 고용주가 지출한 접대비를 종업원에게 환급하여 종업원의 총소득에 포함된 경우
- ② 식사비 및 접대비가 광고 또는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된 경우
- ③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 행사 티켓과 함께 제공하는 식사비 등

라. 장부기장 의무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려면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장부기장이 필요하다. 비용지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기록을 하거나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필요한데, 이는 문서상의 자료가 구두자료에 비해 보다 신뢰할 만하기 때문이다.

적절한 기록이란 비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회계장부, 다이어리 등 이와 유사한 것들이다. 문서상의 자료에는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지급 처리된 수표(canceled checks), 계산청구서 등이 포함된다.

예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다.

- ① 75달러 미만인 경우
- ② 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교통비

접대비의 경우 기록되어야 할 사항은 금액, 시간, 장소와 사업목적 및 사업관련성이다. 금액은 각각 별도로 기록하여야 하고 택시비, 전화요금 등과 같은 부수적인 비용은 일별로 합산해서 기록할 수 있다. 시간이란 접대가 발생한 날짜를 기록하는 것이고 장소는 명칭과 주소 또는 위치를 기록해야 한다. 접대비의 경우 사업목적이란 회의 및 기타 접대 활동의 성격을 의미한다. 만일 접대가 직접적으로 사업관련 회의 전후에 있었다면, 날짜, 장소, 성격, 회의기간, 회의와 접대에 모두 참석한 사람을 기록한다. 사업관련성이란 접대받은 사람의 직업 또는 이름, 직위 등 기타 정보가 사업관련성을 나타낸다. 접대의 경우 반드시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종업원이 참석해야 한다.

2. 일본

『조세특별조치법』에 교제비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교제비 등이란 교제비, 접대비, 기밀비, 그 외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매출처, 매입처, 그의 사업에 관계되는 자 등에 대한 접대, 향응, 위안, 선사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한 것을 말한다.

집대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종업원의 위안을 위하여 행해지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달력·수첩·수건 등의 물품을 증여하는데 요구되는 비용, 회의와 관련된 다과·도시락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요구되는 비용, 신문·잡지 등의 출판물이나 방송프로그램의 편집을 위하여 실시하는 좌담회 등에 요구되는 비용 등이다.

일본의 경우 교제비 손금불산입제도는 무분별하고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고, 기업의 자본축적을 꾀하기 위하여 1952년에 도입되었다. 당시 일본은 기초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내수확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교제비가 상당히 낭비되고 있었으며, 수입이 증가하여 국제수지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손금불산입제도의 도입 당시 대상기업은 자본금 500만엔 이상인 법인이며, 손금불산입 한도액은 지출교제비에서 거래액기준금액 또는 실적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손금불산입하는 방식이었다. ‘거래액기준금액’이란 주된 사업의 구분에 따라서 거래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예를 들면, 제조업은 제품매출액의 0.8%임)이며, ‘실적기준금액’이란 교제비 지출실적의 70% 상당액을 말한다.

1959년도 세법개정에서는 거래액기준과 실적기준을 폐지하고 당기에 지출한 교제비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의 20%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단순화하였다. 일정금액이란 법인의 자본(자본금, 자본적립금, 재평가적립금 및 이익적립금)의 0.1%에 상당한 금액에 300만엔을 가산한 금액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1977년 세법개정에서는 총자본의 일정비율을 손금불산입하던 것을 폐지하고, 자본금 1천만엔 이하의 법인에는 연 400만엔, 자본금 1천만엔 초과 5천만엔 이하의 법인에는 연 300만엔, 자본금 5천만엔 이상인 법인에는 연 200만엔으로 정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교제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제

비 실패와 그 지출액이 매년 증가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판도 커짐에 따라, 1980년에는 원칙적으로 교제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나 중소기업에 한해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을 인정하였다. 손금산입 한도액은 자본금액이 1천만엔 이하인 법인은 연 400만엔까지, 자본금액이 1천만엔 초과 5천만엔 이하인 법인은 연 300만엔까지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초과분에 대해 손금불산입하였다.

1993년 세법개정에서는 자본금액이 1천만엔 이하인 법인은 교제비 지출액의 연 400만엔까지의 90%, 자본금액이 1천만엔 초과 5천만엔 이하인 법인은 교제비 지출액의 연 300만엔까지의 90%로 손금한도액이 조정되었다. 기업 규모별 손금산입 한도액은 변화가 없으나 지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출액의 90%까지만 손금산입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손금산입액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금 800만엔인 법인이 200만엔의 교제비를 지출한 경우 20만엔($200\text{만엔} \times 10\%$)이 손금불산입되며, 600만엔의 교제비를 지출한 경우는 240만엔($200\text{만엔} + 400\text{만엔} \times 10\%$)이 손금불산입된다.

1995년에는 교제비의 손금산입 금액이 자본금이 1천만엔 이하인 법인은 지출액 중 400만엔까지의 80%, 자본금이 1천만엔 초과 5천만엔 이하의 법인은 교제비 지출액 중 300만엔까지의 80%로 손금산입 비율이 축소되었다.

2002년 세법개정에서는 자본금 1천만엔 초과 5천만엔 이하의 법인의 손금산입비율 적용기준이 300만엔에서 400만엔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 세법개정에는 400만엔의 정액 공제를 인정하는 대상법인을 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현행 자본금 5천만엔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정액 공제액까지의 금액의 손금불산입비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였다.

<표IV-3>은 1978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 자본금 규모별 기업의 교제비지출액 추이를 보여준다.

〈표 IV-1〉 일본의 교제비 손금불산입 한도액 개정 연혁

연도	손금산입 한도액
19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또는 교제비 지출액의 70% 중 큰 금액)$\times 1/2$ • 자본금 500만엔 이상인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
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xt{자본} \times 0.001) + 300\text{만엔}) \times 0.2$ • 자본금 500만엔 이상인 경우 손금불산입 대상
19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1,000만엔 이하: 연 400만엔 • 자본금 1,000만~5,000만엔: 연 300만엔 • 자본금 5,000만엔 초과: 연 200만엔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1,000만엔 이하: 연 400만엔 • 자본금 1,000만~5,000만엔: 연 300만엔 • 자본금 5,000만엔 초과: 전액 손금불산입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1,000만엔 이하: (연 400만엔 또는 교제비지출액 중 적은 금액)$\times 90\%$ • 자본금 1,000만~5,000만엔: (연 300만엔 또는 교제비지출액 중 적은 금액)$\times 90\%$ • 자본금 5,000만엔 초과: 전액 손금불산입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1,000만엔 이하: (연 400만엔 또는 교제비지출액 중 적은 금액)$\times 80\%$ • 자본금 1,000만~5,000만엔: (연 300만엔 또는 교제비지출액 중 적은 금액)$\times 80\%$ • 자본금 5,000만엔 초과: 전액 손금불산입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5,000만엔 이하: (연 400만엔 또는 교제비지출액 중 적은 금액)$\times 80\%$ • 자본금 5,000만엔 초과: 전액 손금불산입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1억엔 이하: (연 400만엔 또는 교제비지출액 중 적은 금액)$\times 90\%$ • 자본금 1억엔 초과: 전액 손금불산입

IV. 외국의 접대비 관련 제도 55

<표 IV-2> 교제비 지출액 추이

(단위: 조엔, %)

	자본금 ~1,000만엔	자본금 1,000~5,000만엔	자본금 5,000만엔~	계	증가율
1978	1.1	0.6	0.9	2.6	
1979	1.2	0.7	1	2.9	11.5
1980	1.3	0.7	1.1	3.1	6.9
1981	1.3	0.8	1.2	3.3	6.5
1982	1.4	0.8	1.3	3.5	6.1
1983	1.4	0.8	1.3	3.5	0.0
1984	1.4	0.8	1.4	3.6	2.9
1985	1.4	0.9	1.5	3.9	8.3
1986	1.5	0.9	1.5	3.9	0.0
1987	1.6	1.1	1.5	4.2	7.7
1988	1.7	1.2	1.7	4.6	9.5
1989	1.9	1.3	1.8	5	8.7
1990	2.1	1.4	2.1	5.6	12.0
1991	2.2	1.6	2.3	6.1	8.9
1992	2.2	1.8	2.2	6.2	1.6
1993	2	1.8	2.1	5.9	-4.8
1994	1.7	1.7	2	5.4	-8.5
1995	1.4	2	1.9	5.3	-1.9
1996	1.1	2.3	2	5.4	1.9
1997	1	2.3	2	5.3	-1.9
1998	1	2	2	5.1	-3.8
1999	0.9	1.9	1.6	4.4	-13.7
2000	0.8	1.7	1.8	4.4	0.0
2001	0.8	1.7	1.4	3.9	-11.4

3. 독일

가.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처리

접대비는 독일소득세법(German Income Tax Code(GITC) sec.4 para.5 no.1)상의 규정을 따른다. 업무관련 접대비는 만일 그 비용이 세법에 관한 일반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것이고 장부상의 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수 있다면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비용이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접대장소, 접대일시, 참가자, 행사내용, 비용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만일 레스토랑에서 접대가 이루어졌다면 행사내용과 참가자, 레스토랑에서 보낸 계산서 정보만으로 충분하다. 접대비는 다른 비용과 별도로 기록되어야 한다(Sec. 4 para. 7 GITC).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접대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독인연방재무부(German Federal Office of Finance)는 1994년 11월 21일 특별규정에 의해 부수적인 설명을 하였는데, 예를 들면 레스토랑의 이름과 주소, 접대날짜,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비용, 해외 접대에 관한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의 처리

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input VAT)의 법률 변경에 따라 계산서상의 총액이 아니라 80%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법정(Munich Tax Court)에서는 2002년 12월 2일 독일의 부가가치세법에서 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20%에 대해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EU 법 때문이라고 표명하였다. 따라서 유럽의 법원이 동의하면 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100% 공제가 가능하다.

다. 특별 행사와 관련된 접대비

1) 기업행사/야외근무

기업행사는 친목 성격의 모임이고 모든 근로자들이 참석할 의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연례수련회, 기업 내의 크리스마스 파티 등이다. 기업행사 비용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정기적” 파티는 근로자에게 일종의 부가급여로서 과세될 수 있다. 독일 과세당국은 “비정기적” 파티를 수일에 걸친 행사로 정의하고 있다. 독일 과세당국은 연간 2개의 파티까지 “정기적”인 행사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행사가 과세당국에 의한 “정기적”인 행사에 해당될지라도, 만일 파티 비용이 근로자 1인당 연간 EUR 110을 초과하면 근로자들의 급여로서 과세할 수도 있다.

2) 업무관련 저녁식사

운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제공된 음식은 EUR 40을 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정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관련 저녁식사만 과세 목적상 근로자의 임금으로 본다. 업무관련 저녁식사에 대한 비용은 기업입장에서는 공제되는 비용이다.

3) 오락/문화

EUR 40까지의 문화/오락(꽃, 책)에 관한 비용은 근로자의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금전 형태의 문화/오락 비용은 항상 임금으로 처리되어 근로자에게 과세된다. 이들 비용은 기업 입장에서 전액 공제된다. 근무시간중에 무료 또는 저가로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음료 및 담배 등은 오락비용으로 처리된다.

4) 장려금

사업 파트너에게 장려금(incentive) 명목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상황에 따라 공제될 수도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제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출장비(travelling)와 주택비용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전액 공제된다. 숙소(guesthouse)에서 발생한 비용의 경우 전액 공제되지 않는다. 적절하고 기록이 있는 접대비용은 80%까지 사업관련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EUR 40을 초과하고 사업관련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 모든 비용은 증여로 처리된다. 그러나 적절하고 기록이 있는 접대비용은 80%까지 사업 관련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발생된 비용이 근로자에게 제공된 장려금이라면 전액 공제된다. 장려금을 받은 사람은 특별 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5) 출장비

독일 재정당국(fiscal authorities)에 따르면, 사업 관련 여행중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만일 그것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대상인 부가급여로 보아 근로자에게 과세된다. 공적으로 인정되는 합계액은 24시간에 EUR 24, 14시간 이상인 경우 EUR 12, 14시간 미만인 경우 EUR 6이다. 공적인 보상금액은 식사 종류(예: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다르다. 기타 일반적인 업무 관련 여행비용은 근로자에게 과세되지 않는다.

6) 특별 행사

특별 행사는 EUR 40을 초과하면 사업 파트너에 대한 증여와 유사하게 과세되고 과세 목적상 공제되지 않는다. 만일 근로자들이 고용주

가 개최하는 특별 행사에 참석하면 그들은 일종의 부가급여로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만일 고용주가 근로자들을 위해 마련한 기업 파티인 경우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된다.

라. 기타비용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EUR 40을 초과하는 증여(Sec.4 para.5 no.1 GITC)는 전액 공제대상이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근로자 이외의 자를 위한 주택 및 주택(Guesthouses: Sec.4 para.5 no.3 GITC) 유지보수와 같이 접대와 관련된 설비시설에 사용된 비용은 전액 공제대상이 되며 이들 설비는 사무소 외부에 위치해야 한다.

사냥, 낚시, 요트 및 접대와 관련된 이와 유사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은 전액 공제대상이다(Sec.4 para.5 no.4 GITC).

4. 영국

영국의 경우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임직원의 급여로 처리하고, 근로소득 계산시 비용으로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접대비 지출행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음식·담배·상품권 등의 형태로 주지 않고 광고선전비와 유사하게 지출되는 금액은 50파운드(약 9.5만원)까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해외 접대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5. 프랑스

사업목적의 접대비는 일반적으로 손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임직원에 의하여 지출된 접대비에 대해 증빙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다음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① 200인 이상인 회사에서 연봉상위 5명이 100만프랑(약 1억 6천만원), 10명이 200만프랑(약 3억 2천만원), 임직원 1인이 32만 5천프랑(5,200만원)이상 지급한 현물급여, ② 상기 임직원의 10만프랑(약 1,600만원)이상의 여행비, ③ 상기 임직원의 2만프랑(약 320만원)이상의 부분적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비용 및 업무무관 자산 비용, ④ 판매촉진용 이외의 목적으로 주는 1인당 200프랑 이하, 전체 2만프랑(약 320만원) 이상인 선물, ⑤ 4만프랑(약 64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6. 접대비 관련 세제의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1984년 세법개정시 접대비 중 신용카드에 의해 거래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함으로써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접대비 지출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상이 되는 기업은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이다. 그 이듬해인 1985년에는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이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되었고 1987년에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재차 확대되었다. 이는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접대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건당 10만원 이하인 소액접대비는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1998년 건당 접대비 5만원 이상 지출시 100%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10만원 초과하는 현금 거래분에 대한 접대비지출명세서 제출제도는 폐지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1984~1998년 기간중에 의무적으로 제출하

도록 했던 접대비지출명세서에는 접대비 발생액과 건수, 현금거래와 신용카드거래, 소액접대비 등을 구분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었고 현금 사용분에 대해서는 발생일자, 접대비금액, 지급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상호, 대표자명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지역별 신용카드 사용의무비율제도를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와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접대비 명목으로 소득공제를 하려면 장부기록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75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증빙자료 보관의무에서 제외된다. 증빙자료에서 요구되는 사항은 금액, 시간, 장소와 사업목적 및 사업관련성이다. 금액은 건별로 각각 기록하여야 하고 식사비 외에 교통비, 전화요금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구분하여 기록하게 되어 있다. 사업관련 회의가 접대와 함께 이루어졌다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접대 장소에 반드시 종업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접대받은 사람의 직업, 이름, 직위 등도 기록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 신용카드 사용의무제도가 도입되면서 접대비지출증빙의무가 없어진 것은 접대비를 기업의 기타 경비와 유사하게 다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의무제도는 단지 지출했음을 증빙하는 것이므로 접대비 명목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이 실제 접대비 성격의 지출인지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겠다. 그러나 접대비는 성격상 기타 경비에 비해 지출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기 쉬운 부분이 있으므로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일정금액 이상 접대비에 대하여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목적, 지출자, 상대방, 금액, 장소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2003년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이미 폐지된 바 있는 접대비지출명세서보다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며 현금지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

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나 지출목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미국의 제도에서 볼 수 있는 사업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의 <표 IV-4>는 각국의 손금한도액과 증빙의무를 비교한 것이다. 증빙이란 단순히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접대발생여부를 의미하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그동안 5만원 이상 금액의 경우 신용카드사용의무가 있으나 그 밖에 접대행위 발생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었다. 미국의 경우 75달러 이상인 경우 접대행위 발생을 입증할 만한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독일도 식사비인 경우 미국과 유사하게 사업관련성을 증빙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영국은 접대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의 증빙의무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표 IV-3> 손금한도액 및 증빙의무 국제비교

	손금한도	증빙 의무
한국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 + 매출액 × (0.2~0.03%)	- 5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의무 -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지출 : 납세 자는 업무와의 유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5년간 보관
미국	- 지출액의 50% - 증정품:1인당 25달러까지 손비인정	- 75달러 초과하는 경우 증빙서류 보 관의무 - 금액, 접대일자, 장소, 사업목적, 사 업관련성 기록
일본	- 자본금 1억엔 초과: 전액 손금불 산입 - 자본금 1억엔 이하: 교제비지출액-(연 400만엔 또는 교제비지출액 중 적은 금액×90%)	
영국	- 전액 손금부인 - 1인당 50파운드이내의 광고용품 손 비인정	
독일	- 80% 손비인정 - 1인당 40유로의 증정품 손비인정	- 접대장소, 접대일시, 참가자, 행사내 용 등에 대한 기록
프랑스	- 전액 손비인정	- 임직원이 지출한 접대비: 증빙보관 - 특정한도 초과: 명세서제출의무

<표 IV-5>는 미국·일본 및 한국의 접대비 손금한도의 계산방법 및 개정내역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접대비 손금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금액에 자본금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식이었으나 1999년부터 자본금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현재는 기본금액에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자본금 규모가 큰 기업은 접대비를 전액 손금 불산입하고 있어 일정금액 내에서는 무조건 손금으로 인정하는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 1954~1960년 기간과 1961~1978년 기간

에는 거래금액이나 자본금의 일정비율을 반영하여 손금한도를 산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교제비 손금한도 기준이 달라지긴 하지만 자본금의 일정비율을 손금한도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산출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접대비 지출 규모가 작더라도 일정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또한 개정연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접대비 손금한도 규정이 상당히 수시로 개정되었던 것으로 보아 접대비의 손금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의 접대비 손금한도 기준은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 산출방식도 상당히 단순하고 관련 규정의 변화도 많지 않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1986년 이전까지 지출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오다 1986년 들어서 지출액의 80%로 손금한도를 축소하였고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지출액의 50%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손금한도에 대한 규정은 단순한 반면 사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이 접대비 명목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단순히 지출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접대행위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또는 업무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접대인지를 파악하는 데 주목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세제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대비 손금한도 산출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손금한도 계산방식만으로 세 나라의 손금한도 규모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일지라도 지출액의 일정 부분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이 접대비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 일정액까지는 무조건 손금을 인정하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업 규모별로 제한을 한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IV. 외국의 접대비 관련 제도 65

<표 IV-4> 접대비 손금한도 개정의 한·미·일 비교

한국		일본		미국	
적용 기간	손금한도	적용 기간	손금한도	적용 기간	손금 한도
1979 이전	100만원+자본금×2%+매출액×0.4%	1961 ~ 1978	•((자본×0.001)+300만엔)×0.2 •자본금 50만엔 이상인 경우 손금 불산입 대상	1986 이전	전액
1980 ~ 1981	300만원+자본금×2%+매출액×0.2%	1979 ~ 1981	•자본금 1,000만엔 이하: 연 400만엔 •자본금 1,000만~5,000만엔 : 연 300만엔 •자본금 5,000만엔 초과: 연 200만엔		
1982 ~ 1993	• 일반기업: 600만원+자본금×2%+매출액 ×0.1% • 중소기업: 1,200만원+자본금×2%+매출액 ×0.2%	1982 ~ 1993	•자본금 1,000만엔 이하: 연 400만엔 •자본금 1,000만~5,000만엔 : 연 300만엔 •자본금 5,000만엔 초과 : 전액 손금불산입	1986 ~ 1994	지출액 의 80%
1994 ~ 1995	• 일반기업: 600만원+자본금×2%+매출액 ×0.15% • 중소기업: 1,800만원+자본금×2%+매출액 ×0.3%	1994 ~ 1997	•자본금 1,000만엔 이하 : (연 400만엔 또는 교제비지출액 중 적은 금액)×90% •자본금 1,000만~5,000만엔 : (연 300만엔 또는 교제비지출액 중 적은 금액)×90% •자본금 5,000만엔 초과 : 전액 손금불산입		
1996	2,400만원+자본금×2%+매출액× (0.3~0.1%)	1998 ~ 2001	•자본금 1,000만엔 이하 : (연 400만엔 또는 교제비지출액 중 적은 금액)×80% •자본금 1,000만~5,000만엔 : (연 300만엔 또는 교제비지출액 중 적은 금액)×80% •자본금 5,000만엔 초과: 전액 손금 불산입	1986 ~ 1994	지출액 의 50%
1997	2,400만원+자본금×1%(중소기업 은 2%)×매출액×(0.3~0.1%)				
1998	• 일반기업: 1,200만원+매출액 ×(0.3~0.06%) • 중소기업: 1,800만원+자본금 ×1%+매출액×(0.3~0.06%)				
1999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원) +매출액×(0.3~0.04%)				
2000	1,200만원(중소기업은 1,800만 원)+매출액×(0.2~0.03%)	2002	•자본금 5,000만엔 이하 : (연 400만엔 또는 교제비지출액 중 적은 금액)×80% •자본금 5,000만엔 초과: 전액 손금 불산입	1986 ~ 1994	지출액 의 50%
		2003	•자본금 1억엔 이하 : (연 400만엔 또는 교제비지출액 중 적은 금액)×90% •자본금 1억엔 초과: 전액 손금불 산입		

V. 접대비 규제와 유흥산업의 규모

1. 유흥산업의 규모

본 절에서는 접대비와 관련하여 수 차례의 주요 세제개편이 있었던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유흥산업 규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접대비 관련 세제개편과 유흥산업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유흥산업의 범위를 단정적으로 규정할 만한 근거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접대행위가 일어나는 장소라 할 수 있는 음식점 및 주점을 넓은 의미에서의 유흥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주점만을 유흥산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자료 중 유흥산업 규모를 추정할 만한 자료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가 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별 종사자 수 및 사업체 수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매년 발간되고 있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산업세세분류별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뿐만 아니라 매출액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년 단위로 발간되고 1996년에 최초로 발간되었으므로 가능한 자료는 1996년과 2001년 두 개 연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자료 수집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매출액 규모로 유흥산업의 연도별 추이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흥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지표로 유흥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수와 유흥산업에 속한 사업체의 수를 사용하였으며, 경기 등 거시경제 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각각의 비중을 구하였다. 즉, 유흥산업 종사자수의 경우 전체 산업의 종사자수에 대한 비중을, 유흥산업 사업체수의 경우도 전체 산업의 사업체수에

대한 비중을 유흥산업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연간조사로서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사용하였다. 이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체이다. 단,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 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은 제외한다. 조사단위는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제공 등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이다. 2001년 통계의 경우 조사대상기간은 2001. 1. 1.~2001. 12. 31.이고 조사는 2002. 4. 8.~2002. 4. 27. 기간에 이루어졌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업무가 시·군·구로 미이관된 경우에는 읍·면·동 직원이 직접 조사하는 방식에 의한다.

분석대상인 일반음식점업과 주점업은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하위분류에 속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숙박업과 음식점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숙박업은 일단 분석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점업의 하위분류는 일반음식점업, 기타음식점업, 주점업, 다과점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음식점업은 한식점업, 중국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서양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일반음식점업으로 분류되고 기타음식점업은 피자, 햄버거 및 치킨전문점, 분식 및 김밥전문점, 그 외 기타 음식점업으로 분류된다. 기타음식점업에 속하는 업종은 접대비와 관련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점업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간이주점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과점업 역시 접대비와 관련이 거의 없다고 보고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일반음식점업과 주점업이다.

<표 V-1>은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에 의한 1993~2001년 기간중의 일반음식점업과 주점업의 사업체 수, 사

업체 수 증가율, 전체 사업체에서 각 해당 업종의 사업체 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음식점업+주점업과 주점업의 사업체수 증가율은 IMF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이전인 1994~1997년 기간에 전산업 사업체 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초기인 1998년에는 일반음식점업+주점업은 전산업 사업체 수 감소율보다 적은 폭으로 감소한 반면 주점업은 전산업 감소율보다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증가율에 있어 차이가 두드러진다. 2000, 2001년 기간에도 주점업의 경우 전산업 사업체수 증가율인 2.94%, 1.26%를 훨씬 상회하는 5.73%, 6.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2년에는 전산업에서 주점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31%로 1997년의 4.33%(주점업)와 비슷한 규모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표 V-0〉 사업체수 증가율 추이

(단위: 개, %)

	전산업		일반음식점업+주점업			주점업		
	사업체수	증가율	사업체수	증가율	비중	사업체수	증가율	비중
1993	2,304,250	-	274,503	-	11.91	83,969	-	3.64
1994	2,518,454	9.30	312,220	13.74	12.40	94,348	12.36	3.75
1995	2,771,068	10.03	362,175	16.00	13.07	110,288	16.89	3.98
1996	2,807,802	1.33	386,620	6.75	13.77	117,370	6.42	4.18
1997	2,853,673	1.63	408,550	5.67	14.32	123,654	5.35	4.33
1998	2,785,659	-2.38	405,761	-0.68	14.57	115,044	-6.96	4.13
1999	2,927,330	5.09	413,007	1.79	14.11	116,815	1.54	3.99
2000	3,013,417	2.94	422,919	2.40	14.03	123,512	5.73	4.10
2001	3,051,482	1.26	439,105	3.83	14.39	131,568	6.52	4.31

V. 접대비 규제와 유흥산업의 규모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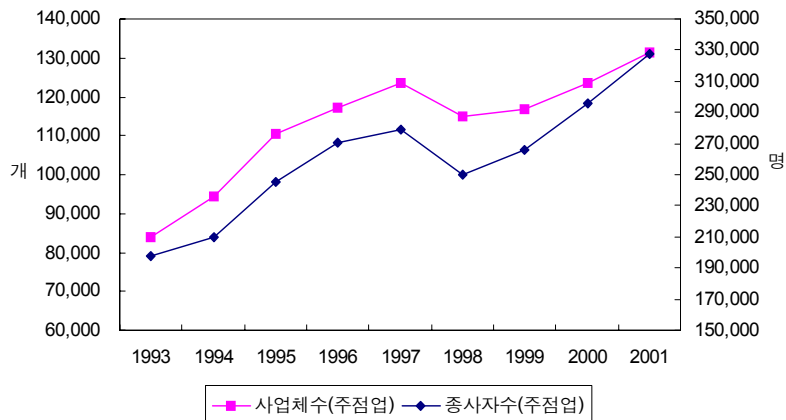
일반음식점업+주점업과 주점업의 종사자수 증가율 역시 사업체수의 증가율과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체 수의 경우 주점업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도에 IMF 경제체제 이전인 1997년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주점업 종사자수가 전체 종사자수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에 2.28%로 1997년의 2.07%보다 그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으므로 종사자 수로 볼 때 주점업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V-1> 종사자수 증가율 추이

(단위: 명, %)

	전산업		일반음식점업+주점업			주점업		
	종사자수	증가율	종사자수	증가율	비중	종사자수	증가율	비중
1993	12,245,073	-	732,874	-	5.99	197,410	-	1.61
1994	12,583,630	2.76	779,529	6.37	6.19	209,920	6.34	1.67
1995	13,634,273	8.35	891,953	14.42	6.54	245,250	16.83	1.80
1996	14,006,754	2.73	962,872	7.95	6.87	270,773	10.41	1.93
1997	13,470,343	-3.83	974,481	1.21	7.23	278,589	2.89	2.07
1998	12,416,558	-7.82	928,206	-4.75	7.48	250,441	-10.10	2.02
1999	12,920,289	4.06	996,793	7.39	7.71	265,512	6.02	2.06
2000	13,604,274	5.29	1,088,233	9.17	8.00	295,998	11.48	2.18
2001	14,336,604	5.38	1,187,845	9.15	8.29	327,328	10.58	2.28

[그림 V-0] 주점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



2. 연관관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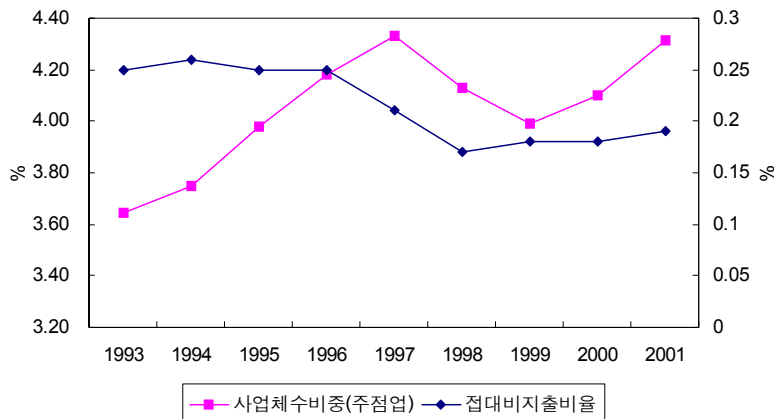
가. 접대비지출과 유흥산업의 규모

본 절에서는 유흥산업 규모의 변화와 접대비 관련 세제개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앞 절에서 활용했던 자료를 사용한다. 유흥산업도 주점업만을 사용한 경우, 일반음식점업만을 사용한 경우 및 주점업 및 일반음식점업의 합계를 사용한 경우를 각각 고려한다. 접대비지출을 나타내는 변수로 매출액에 대한 접대비의 비중을 사용한다. 또한 기업의 접대비지출 변화와 유흥산업 규모 변화와의 상관관계도 분석하기 위하여 접대비비율의 증가율과 유흥산업의 사업체증가율 및 종사자증가율을 사용한다. 접대비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의 자료를 사용한다.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경우 소규모 기업에서부터 대기업까지 모든 기업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신용평가의 자료보다 본 분석을 위해서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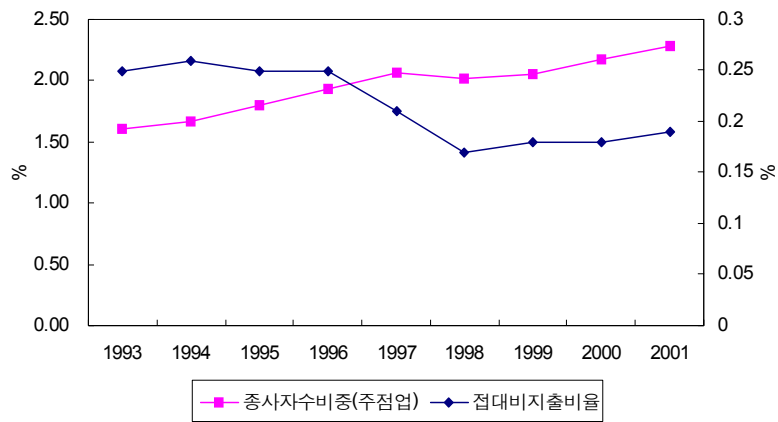
1) 주점업만을 사용한 경우

<표 V-3>은 주점업만을 사용하여 유흥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비중의 증가율, 그리고 접대비비율을 연도 별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V-2]를 보면 접대비비율의 경우 1996년까지 0.25%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급격히 감소한 후 최근에는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점업 사업체비중의 경우 1997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999년까지 감소한 이후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7년에는 두 변수가 정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V-3]에 나타나 있는 종사자비중의 경우도 사업체비중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V-1] 사업체비중(주점업)과 접대비비율



[그림 V-2] 종사자비중(주점업)과 접대비비율



〈표 V-2〉 주점업 사업체 및 종사자의 비중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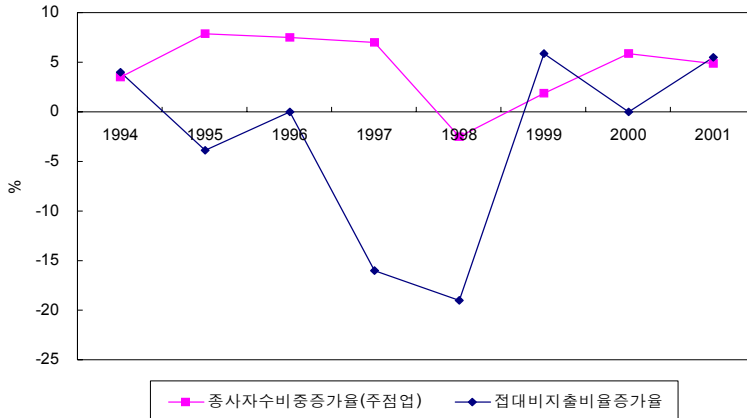
(단위: 개, 명, %)

	접대비		사업체		종사자	
	비율	비율증가율	비중	비중증가율	비중	비중증가율
1993	0.25	-	3.64	-	1.61	-
1994	0.26	4.00	3.75	2.80	1.67	3.48
1995	0.25	-3.85	3.98	6.24	1.80	7.83
1996	0.25	0.00	4.18	5.03	1.93	7.47
1997	0.21	-16.00	4.33	3.66	2.07	6.98
1998	0.17	-19.05	4.13	-4.69	2.02	-2.47
1999	0.18	5.88	3.99	-3.37	2.06	1.88
2000	0.18	0.00	4.10	2.71	2.18	5.88
2001	0.19	5.56	4.31	5.19	2.28	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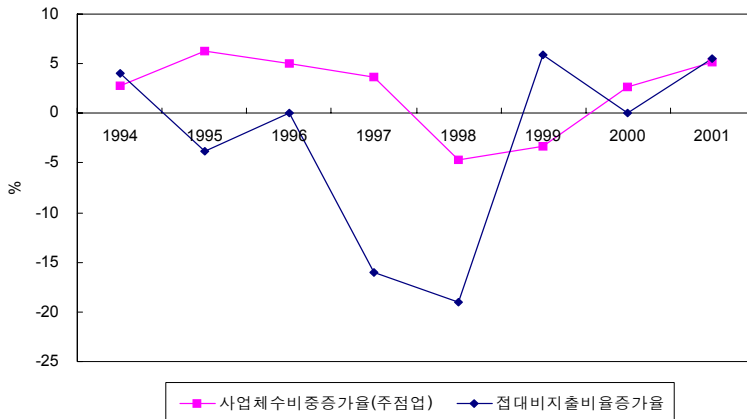
〈표 V-3〉은 각 변수의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관련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대비비율 감소의 폭이 가장 컸던 1998년의 경우 사업체비중

증가율과 종사자비중증가율 역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접대비비율이 증가로 돌아선 1999년에도 사업체비중증가율은 3.37%의 감소를 보인 반면 종사자비중증가율은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점업의 경우 사업체비중보다 종사자비중이 접대비비율의 증감추세와 더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3] 종사자비중증가율(주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



[그림 V-4] 사업체비중증가율(주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



<표 V-4>와 <표 V-5>는 접대비비율증가율과 유흥산업 종사자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와 접대비비율증가율과 유흥산업 사업체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종사자비중증가율과 접대비비율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수가 0.66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통계적으로는 10% 수준에서 유의하다. 본 결과는 유흥산업의 규모와 접대비지출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업체비중증가율과 접대비비율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0.458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다.

<표 V-4> 종사자비중증가율(주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의 상관관계

	종사자비중증가율 (주점업)	접대비비율증가율
종사자비중증가율(주점업)	1.000	0.668 (0.071)
접대비비율증가율	0.668 (0.071)	1.000

<표 V-5> 사업체비중증가율(주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의 상관관계

	사업체비중증가율 (주점업)	접대비비율증가율
사업체비중증가율(주점업)	1.000	0.458 (0.254)
접대비비율증가율	0.458 (0.254)	1.000

2) 일반음식점업만을 사용한 경우

<표 V-6>은 일반음식점업만을 사용하여 유흥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증가율을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일반음식점업의 경우 앞에서 분석한 주점업의 경우와는 다르게 연도별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사업체비중은 1998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그 이후 소폭 하락하여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종사자비중의 경우 지속적으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V-5> 일반음식점업 사업체와 종사자의 비중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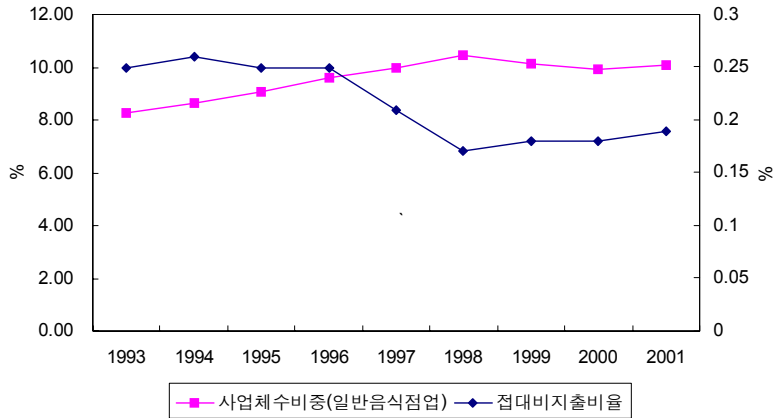
(단위: 개, 명, %)

	접대비 비율	사업체			종사자		
		업체수	비중 ¹⁾	증가율 ²⁾	종사자수	비중 ¹⁾	증가율 ²⁾
1993	0.25	190,534	8.27	-	535,464	4.37	-
1994	0.26	217,872	8.65	14.35	563,609	4.53	6.38
1995	0.25	251,887	9.09	15.61	646,703	4.74	13.53
1996	0.25	269,250	9.59	6.89	692,099	4.94	7.02
1997	0.21	284,896	9.98	5.81	695,892	5.17	0.55
1998	0.17	290,717	10.44	2.04	677,765	5.46	-2.60
1999	0.18	296,192	10.12	1.88	731,281	5.66	7.90
2000	0.18	299,407	9.94	1.09	792,235	5.82	8.34
2001	0.19	307,537	10.08	2.72	860,517	6.00	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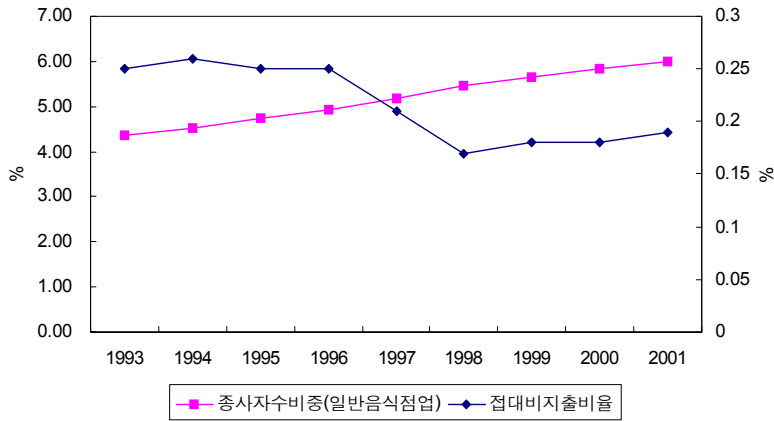
주: 1) 전산업 대비 비중임.

2) 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임.

[그림 V-5] 사업체비중(일반음식점업)과 접대비비율



[그림 V-6] 종사자비중(일반음식점업)과 접대비비율



<표 V-7>은 일반음식점업 사업체비중 및 종사자비중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그림 V-8]과 [그림 V-9]는 접대비비율증가율을 포함한 각 변수의 증가추세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업체비중증가율의 경우 접대비비율이 급속히 하락한 1997년과 1998년에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999년과 2000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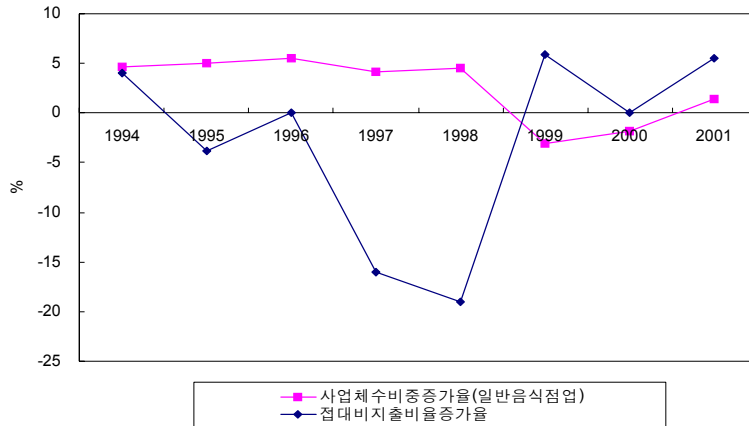
내고 있다. 종사자비중증가율의 경우 접대비비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1998년에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분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V-6> 일반음식점업 사업체 및 종사자의 비중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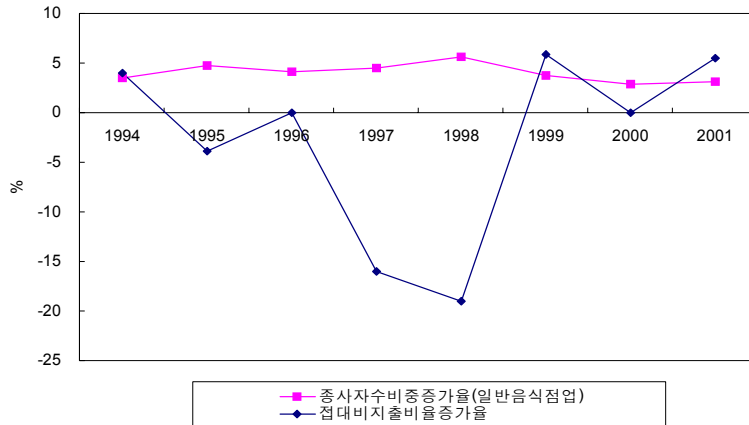
(단위: 개, 명, %)

	접대비		사업체		종사자	
	비율	비율증가율	비중	비중증가율	비중	비중증가율
1993	0.25	-	8.27	-	4.37	-
1994	0.26	4.00	8.65	4.62	4.53	3.51
1995	0.25	-3.85	9.09	5.07	4.74	4.79
1996	0.25	0.00	9.59	5.49	4.94	4.17
1997	0.21	-16.00	9.98	4.11	5.17	4.55
1998	0.17	-19.05	10.44	4.53	5.46	5.66
1999	0.18	5.88	10.12	-3.05	5.66	3.69
2000	0.18	0.00	9.94	-1.80	5.82	2.89
2001	0.19	5.56	10.08	1.43	6.00	3.07

[그림 V-7] 사업체비중증가율(일반음식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



[그림 V-8] 종사자비중증가율(일반음식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



일반음식점을 유흥산업의 범위로 한 경우 종사자증가율과 접대비비율증가율 사이에는 0.752에 해당하는 주점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의 관계가 있으며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도 5% 수준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체비중증가율과 접대비비율증가율 사이에는 0.102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V-7〉 사업체비중증가율(음식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의 상관관계

	사업체비중증가율 (음식점업)	접대비비율증가율
사업체비중증가율(음식점업)	1.000	0.102 (0.810)
접대비비율증가율	0.102 (0.810)	1.000

<표 V-8> 종사자비증가율(음식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의 상관관계

	종사자비증가율 (음식점업)	접대비비율증가율
종사자비증가율(음식점업)	1.000	0.752 (0.032)
접대비비율증가율	0.752 (0.032)	1.000

3) 주점업 및 일반음식점업의 합계를 사용한 경우

<표 V-10>은 주점업 및 일반음식점업의 합계를 사용하여 유흥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비중의 증가율을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체비중 및 종사자비중의 추세가 주점업과 일반음식점업을 각각 유흥산업의 범위로 사용할 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업종을 합계하여 유흥산업의 범위로 재정립하고 각 변수의 추세를 분석해 본다.

종사자비중의 경우 증가폭의 차이는 있지만 분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사업체비중의 경우 1998년까지 증가하였다가 1999년과 2000년에 감소한 이후 2001년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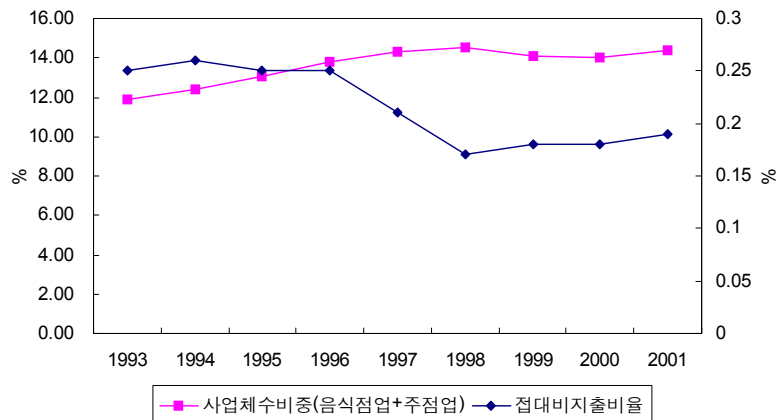
〈표 V-9〉 유흥산업 사업체와 종사자의 비중 및 증가율

(단위: 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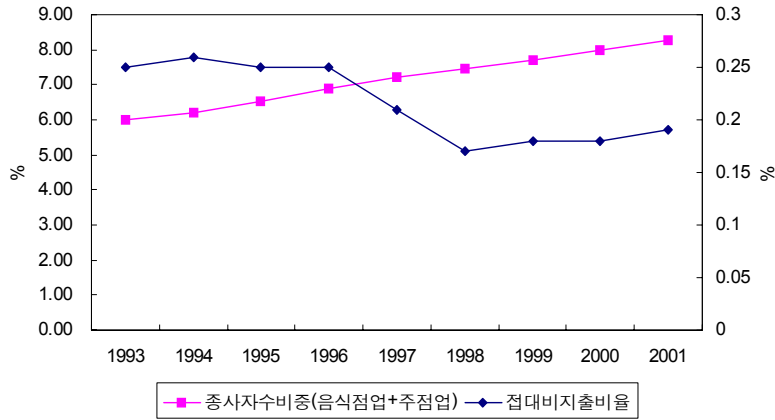
	접대비 비율	사업체			종사자		
		업체수	비중 ¹⁾	증가율 ²⁾	종사자수	비중 ¹⁾	증가율 ²⁾
1993	0.25	274,503	11.91	-	732,874	5.99	-
1994	0.26	312,220	12.40	13.74	779,529	6.19	6.37
1995	0.25	362,175	13.07	16.00	891,953	6.54	14.42
1996	0.25	386,620	13.77	6.75	962,872	6.87	7.95
1997	0.21	408,550	14.32	5.67	974,481	7.23	1.21
1998	0.17	405,761	14.57	-0.68	928,206	7.48	-4.75
1999	0.18	413,007	14.11	1.79	996,796	7.71	7.39
2000	0.18	422,919	14.03	2.40	1,088,233	8.00	9.17
2001	0.19	439,105	14.39	3.83	1,187,845	8.29	9.15

주: 1) 전산업 대비 비중임.

2) 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임.

[그림 V-9] 사업체비중(일반음식점업+주점업)과
접대비비율

[그림 V-10] 종사자비중(일반음식점업+주점업)과
접대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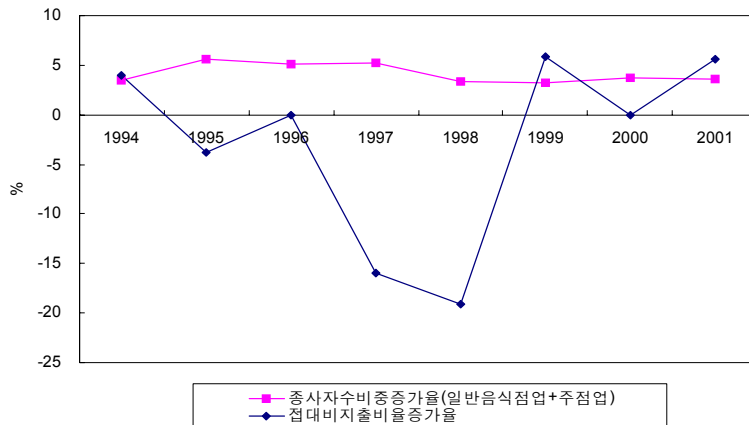
<표 V-11>과 [그림 V-12] 및 [그림 V-13]은 사업체비중 및 종사자비중의 증가율과 접대비비율증가율의 추세를 보여준다. 접대비비율의 증가율이 급속히 하락하였던 1997년에는 종사자비중의 경우 오히려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며 1998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사업체비중증가율의 경우는 1997년과 1998년에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1999년과 2000년에 하락하였고 2001년에 다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일반음식점만 고려한 경우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표 V-10〉 유흥산업(일반음식점업+주점업) 사업체 및
종사자의 비중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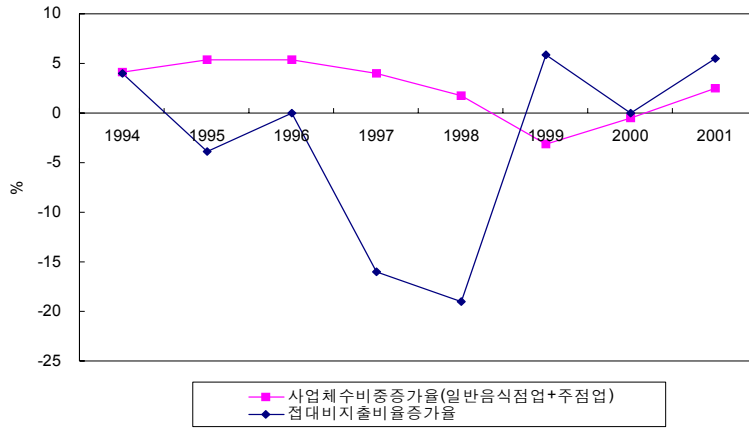
(단위: 개, 명, %)

	접대비		사업체		종사자	
	비율	비율증가율	비중	비중증가율	비중	비중증가율
1993	0.25	-	11.91	-	5.99	-
1994	0.26	4.00	12.40	4.07	6.19	3.50
1995	0.25	-3.85	13.07	5.43	6.54	5.60
1996	0.25	0.00	13.77	5.35	6.87	5.08
1997	0.21	-16.00	14.32	3.97	7.23	5.24
1998	0.17	-19.05	14.57	1.74	7.48	3.34
1999	0.18	5.88	14.11	-3.14	7.71	3.20
2000	0.18	0.00	14.03	-0.53	8.00	3.68
2001	0.19	5.56	14.39	2.53	8.29	3.58

[그림 V-11] 종사자비중증가율(일반음식점업+주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



[그림 V-12] 사업체비중증가율(일반음식점업+주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



일반음식점업과 주점업의 합계를 유흥산업의 범위로 했을 경우 상관관계의 계수는 앞의 두 경우의 중간 값을 가지며 통계적 유의성도 중간 수준이다.

사업체비중증가율과 접대비비율증가율 사이에는 0.235에 해당하는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다.

<표 V-11> 사업체비중증가율(주점업+음식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의 상관관계

	사업체비중증가율 (주점업+음식점업)	접대비비율증가율
사업체비중증가율 (주점업+음식점업)	1.000	0.235 (0.576)
접대비비율증가율	0.235 (0.576)	1.000

〈표 V-12〉 종사자비증증가율(주점업+음식점업)과
 접대비비율증가율의 상관관계

	종사자비증증가율 (주점업+음식점업)	접대비비율증가율
종사자비증증가율 (주점업+음식점업)	1.000	0.732 (0.040)
접대비비율증가율	0.732 (0.040)	1.00000

4) 시차를 고려한 경우

마지막으로 접대비비율증가율과 사업체비증증가율의 변화추이로부터 관찰된 시차를 둔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사업체의 경우 진입 및 퇴출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체비증증가율의 변화가 접대비비율의 변화보다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표 V-14〉는 접대비비율증가율과 사업체비증증가율의 상관관계를 유흥산업의 범위별로 나타낸다.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의 결과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가 도출되고 있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점업의 경우 시차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상관관계 계수보다 월등히 높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V-13〉 접대비비율증가율과 사업체비증증가율의 상관관계

	주점업	음식점업	주점+음식점업
접대비비율증가율	0.713 (0.073)	0.395 (0.380)	0.604 (0.151)

본 절에서의 분석을 요약하면 유흥산업의 범위 중에서도 일반음식점업이 주점업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더 큰 수준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흥산업과 접대비비율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기 위해서는 유흥산업을 나타내는 변수로 종사자비중이 사업체비중보다 더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차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사업체비중과 접대비비율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주점업의 상관관계가 가장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점업 사업체비중의 경우 시차를 고려하면 접대비비율과 유흥산업 규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절의 분석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주점업의 사업체비중증가율에 대한 접대비비율증가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1년의 시차를 고려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주점업 사업체비중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고려하기 위하여 경기를 반영하는 경제성장률증가율과 소득의 증가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확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산업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율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접대비비율증가율과 사업체비중증가율이 정(+)의 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5% 수준에서 유의하다. 경제성장률증가율과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서비스업비중증가율과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크지 않아 그 의미를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조정 R^2 는 0.699를 나타내고 있다. 본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접대비비율증가율이 1년의 시차를 가지고 주점업의 사업체비중증가율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상관관계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와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유흥산업의 다른 범위를 사용한 경우와 종사자비중증가율을 사용한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본 분석 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자료는 국세청에 축적되어 있는 납세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 연구목적으로도 자료의 접근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세계개편과 유흥산업의 규모

현재 유흥산업의 규모와 관련하여 입수 가능한 자료의 시계열이 8년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회귀분석 등을 수행하기 어려워 상관관계의 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세계개편의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로 접대비지출에 대한 손금산입한도의 증가율을 사용한다. 접대비 관련 세계개편이 있는 경우 그 결과는 손금산입한도의 증감으로 나타나므로 세계개편의 효과를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한다.

유흥산업의 범위는 앞서서와 같이 주점업, 일반음식점업, 주점업+일반음식점업의 3가지를 모두 사용한다.

<표 V-15>는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사업체비중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유흥산업의 범위에 따라 나타낸다.

<표 V-14>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사업체비중증가율의 상관관계

	주점+음식점업	주점업	음식점업
손금산입한도증가율	0.797 (0.018)	0.712 (0.047)	0.787 (0.020)

사업체비중증가율과 손금산입한도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주점업의 경우 상관계수가 0.71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음식점업의 경우는 상관계수가 0.787로 더 높은 수준의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주점업과 일반음식점업을 합계한

경우를 보면 상관계수가 0.797로 더욱 높은 수준의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상관계수 모두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V-16>은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종사자비중증가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유흥산업의 범위에 따라 나타낸다.

<표 V-15>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종사자비중증가율의 상관관계

	주점+음식점업	주점업	음식점업
손금산입한도증가율	0.260 (0.534)	0.300 (0.470)	0.227 (0.590)

유흥산업의 범위에 상관없이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종사자비중증가율 사이에는 0.227과 0.30 사이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상관계수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손금산입한도증가율의 변화와 유흥산업 규모의 변화 사이에는 사업체비중증가율을 변수로 할 경우 세계개편의 결과인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I. 접대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분석

1. 접대비 규제와 지출 현황

본 절에서는 세제개편의 결과로 나타나는 손금산입한도의 변화와 접대비지출 및 접대비지출증가율과 접대비비율 및 접대비비율증가율의 변화를 함께 비교해 본다. <표 VI-1>은 관련 통계를 연도별로 나타내며 [그림 VI-1]에서 [그림 VI-4]는 각 변수와 손금산입한도 변화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정책변화에 대한 각 기업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주)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상장기업의 재무자료를 활용하며 분석기간은 1991년부터 2002년까지 12년간이다.

<표 VI-0> 접대비지출과 손금산입한도 증가율

(단위: 천원, %)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금액	증가율	비율 ¹⁾	비율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1	359,184	-	0.41	-	356,829	-
1992	410,788	14.37	0.39	-4.88	395,848	10.93
1993	409,002	-0.43	0.38	-2.56	430,769	8.82
1994	493,572	20.68	0.39	2.63	691,492	60.53
1995	572,300	15.95	0.39	0.00	771,100	11.51
1996	595,300	4.02	0.37	-5.13	689,445	-10.59
1997	594,750	-0.09	0.33	-10.81	767,896	11.38
1998	413,666	-30.45	0.31	-6.06	485,490	-36.78
1999	439,734	6.30	0.29	-6.45	357,160	-26.43
2000	439,449	-0.06	0.27	-6.90	255,724	-28.40
2001	420,903	-4.22	0.34	25.93	265,760	3.92
2002	483,949	14.98	0.27	-20.59	288,441	8.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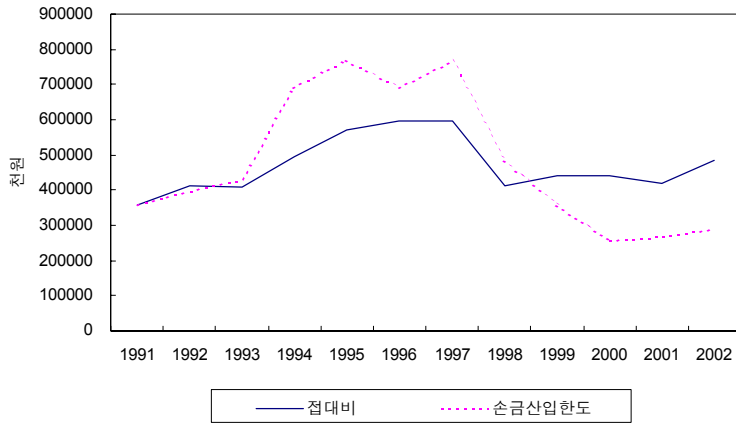
주: 1)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율임.

<표 V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대비비율이 제V장에서 사용하였던 기업경영분석자료로 산출된 접대비비율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본 자료의 성격 때문이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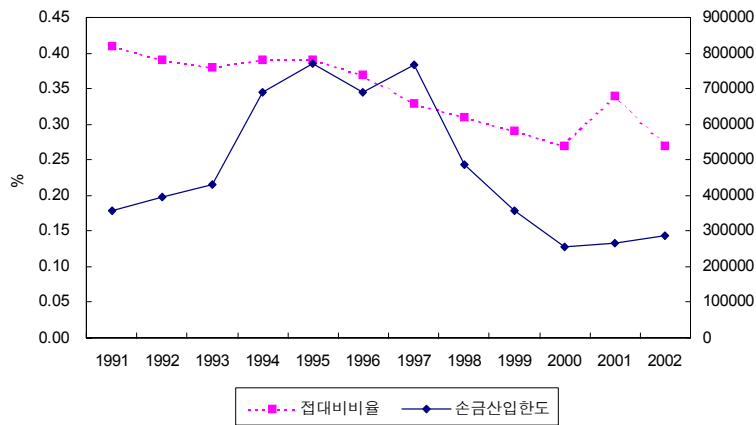
세계상 손금산입한도가 증가하였던 1994년의 경우 접대비 지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20.68%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감소해 오던 접대비 비율도 전년대비 2.63%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손금산입한도가 축소된 1996년의 경우 접대비증가율은 4.02%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접대비비율증가율은 -5.13%로 크게 하락세로 돌아서서 손금산입한도의 변화와 접대비지출의 변화가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7년의 세법개정으로 손금산입한도가 본격적으로 축소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의 변화를 살펴본다. 손금산입한도의 경우 1998년부터 -36.78%, -26.43%, -28.40%씩 매년 크게 감소하였는데 접대비 증가율을 보면 1998년에 -30.45%로 대폭 하락한 이후 1999년에 소폭 상승하였으나 2000년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접대비비율증가율의 경우는 1998년부터 3년간 6%대의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기간 동안에도 손금산입한도의 변화와 접대비비율의 변화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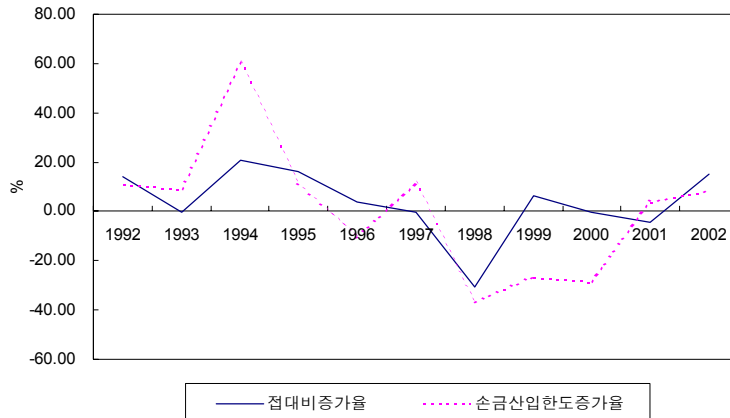
[그림 VI-0] 접대비와 손금산입한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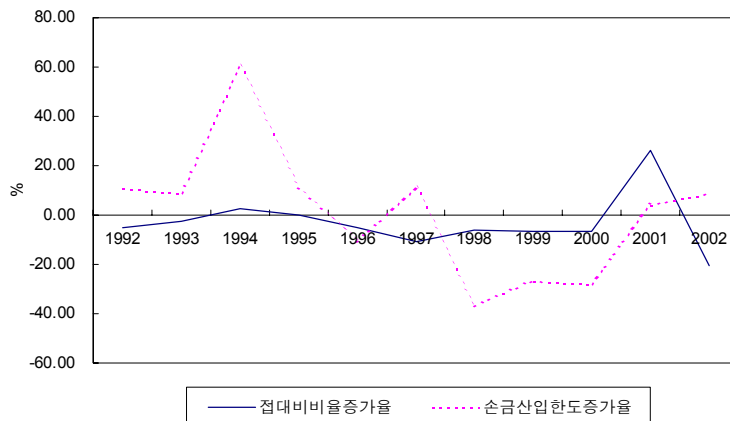
[그림 VI-1] 접대비비율과 손금산입한도 추이



[그림 VI-3] 접대비증가율 및 손금산입한도증가율



[그림 VI-4] 접대비비율증가율과 손금산입한도증가율 추이



2. 세제개편의 효과분석

본 절에서는 접대비 관련세제의 개정이 기업의 접대비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다. 접대비 관련세제의

경제적 효과분석은 손원익(1997)에서 처음 시도되었는데 접대행위가 야기하는 부(-)의 외부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접대비지출이 기업의 매출과 정(+)의 관계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소비성서비스업과 접대비지출이 부(-)의 관계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 이후 박기백·손원익(2003)에서는 Cournot-Nash 형태의 게임모형을 사용하여 접대행위의 경쟁적 성격을 이론적으로 보였으며, 법인세율과 접대비지출과의 부(-)의 관계 및 세금공제비율과 접대비지출과의 정(+)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대비지출이 경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접대비를 당해기업의 매출액으로 나눈 접대비비율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세제개편의 결과인 손금산입한도의 변화율이 접대비비율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독립변수에는 손금산입한도증가율 외에 접대행위의 경쟁적 성격과 관련된 동종 업종내 타기업의 수와 타기업 접대비비율의 평균값을 추가하고, 업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표 VI-2>는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표본통계를 나타낸다.

<표 VI-1> 표본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접대비비율증가율	0.1533307	2.9617756	-0.9934714	215.4991300
손금산입한도증가율	0.0221466	1.0948771	-0.9272309	79.8179779
타기업수	354.0986476	172.5907131	1.0000000	452.0000000
타기업접대비비율평균	0.3374530	0.0998021	0.0193015	1.0187737

주: 표본통계에 사용된 사업체수는 6,285개임.

<표 VI-3>은 실증분석결과를 나타내는데 변수의 포함 여부에 따라 MI 부터 M6까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의 수치는 t 값을 나타낸다.

<표 VI-2> 분석결과

변수	M1	M2	M3	M4	M5	M6
상수	0.12195** (2.27)	0.61688*** (4.49)	0.65990*** (4.92)	0.87068* (1.85)	0.99031*** (6.10)	0.69818 (1.48)
손금산입한도 증가율	1.03923*** (32.97)	1.03944*** (32.95)	1.05127*** (33.21)	1.03947*** (32.95)	1.05762*** (33.27)	1.05840*** (33.27)
기업규모	0.01424 (0.20)	0.00013451 (-0.00)	-0.01305 (-0.18)	-0.00013222 (-0.00)	0.00609 (0.09)	0.00637 (0.09)
어업		-0.58665 (-1.50)		-0.81542 (-1.45)	-0.43206 (-1.10)	-0.14686 (-0.25)
광업		-0.58761 (-0.98)		-0.88516 (-1.13)	-0.50373 (-0.84)	-0.19883 (-0.26)
제조업		-0.51809*** (-3.86)		2.01509 (0.45)	0.17221 (0.82)	-2.87881 (-0.62)
전기가스증기업		-0.56560** (-2.01)		-0.75787* (-1.71)	-0.56055** (-1.99)	-0.32642 (-0.72)
도소매업		-0.54420*** (-2.93)		-0.56856*** (-2.99)	-0.27402 (-1.40)	-0.23236 (-1.13)
운수업		-0.59601** (-2.45)		-0.75701** (-2.02)	-0.26605 (-1.04)	-0.05548 (-0.14)
통신업		0.56381 (-1.08)		-0.80683 (-1.19)	-0.52423 (-1.37)	-0.42722 (-0.63)
사업서비스업		-0.53788* (-1.80)		-0.73973 (-1.59)	0.66219 (1.62)	0.96122 (1.58)
타기업수			0.00045758* (1.68)	-0.00626 (-0.56)		0.00761 (0.66)
타기업접대비 지출비율평균			-2.02760*** (-4.31)		-2.85823*** (-4.30)	-2.98556*** (-4.32)
R ²	0.148	0.150	0.151	0.150	0.152	0.152

주: *** 1%, ** 5%, * 10%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함.

분석모형은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대기업 더미변수만을 포함한 모형(M1)에 업종 더미를 추가한 모형(M2) 또는 접대비경쟁과 관련 있는 동종업종 타기업수와 타기업접대비비율평균을 추가한 모형(M3)과 업종 더미를 추가한 모형(M4, M5) 및 모든 변수를 다 포함한 모형

(M6)을 사용하였다.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기업규모의 더미변수만을 포함한 회귀분석(M1)에서는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접대비비율증가율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으며 추정계수도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손금산입한도증가율의 경우 모든 분석모형에서 접대비비율증가율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손금산입한도의 증가폭이 커질수록 접대비비율의 증가폭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접대비 관련 세제의 개정을 통해 손금산입한도를 조정하는 조세정책이 기업의 접대비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더미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이는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의 특성 때문이라 생각된다.

접대비의 경쟁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변수의 경우 타기업접대비지출평균은 접대비비율증가율과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모든 모형에서 나타났으며 추정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 동종업종에 있는 타기업들의 접대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접대비비율의 증가율은 오히려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박기백·손원익(2003)에서 보였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접대비비율의 변화율이고 분석대상도 상장기업인 반면, 박기백·손원익(2003)에서는 종속변수가 접대비지출이고 분석대상도 상장·등록·외감기업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모형의 차이뿐만 아니라 분석대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동종업종에 있는 타기업수의 경우 M3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타기업수가 증가할수록 접대비비율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동종업종 내에 접대비에 대한 경쟁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외의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

았다.

업종별 구분을 나타내는 업종더미 변수의 경우 도소매업, 운수업, 전기가스증기업 등의 접대비비율증가율이 비교업종인 건설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복리후생비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효과

본 절에서는 접대비지출의 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다. 접대비지출에 대해서는 다른 비용과 다르게 세법상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변칙 회계처리의 유인이 존재하고, 현실에서도 변칙적인 회계처리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접대비지출에 대한 변칙적인 회계처리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용항목은 그 성격이 상대적으로 유사한 복리후생비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접대비지출과 복리후생비지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앞 절에서 사용한 회귀분석 모형에 복리후생비지출을 추가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복리후생비의 경우도 접대비와 마찬가지로 경기상황 및 기업의 규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접대비의 경우와 같이 당해기업의 매출액 대비 비율로 변수를 구성한다.

<표 VI-4>와 [그림 VI-5], [그림 VI-6]은 매출액 대비 접대비비율과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비율(이하 복리후생비비율이라 함)뿐만 아니라 각 비율의 증가율을 연도별로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복리후생비비율의 변화가 접대비비율의 변화보다 그 변화 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증가율의 경우 1997년까지는 서로 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이다가 그 이후 매우 유사하게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가 매우 어려웠던 1998년의 경우 접대비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복리후생비비율은 증가하였으며, 1999년의 경우 접대비비율은 전년대비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복리후생비비율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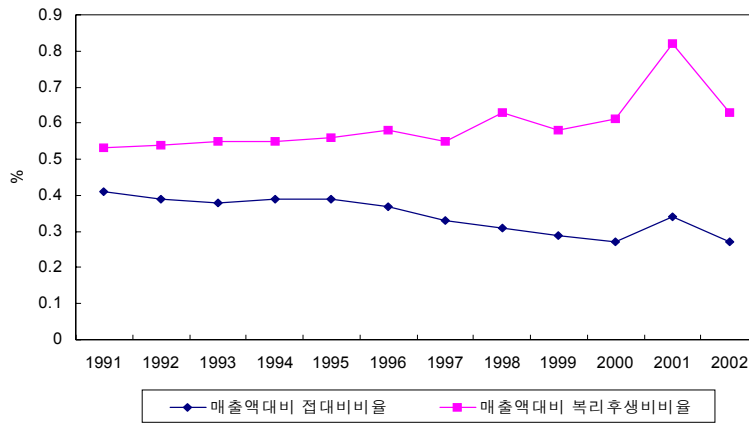
있어 두 변수의 변화가 어느 정도 차별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VI-3> 접대비비율 및 복리후생비비율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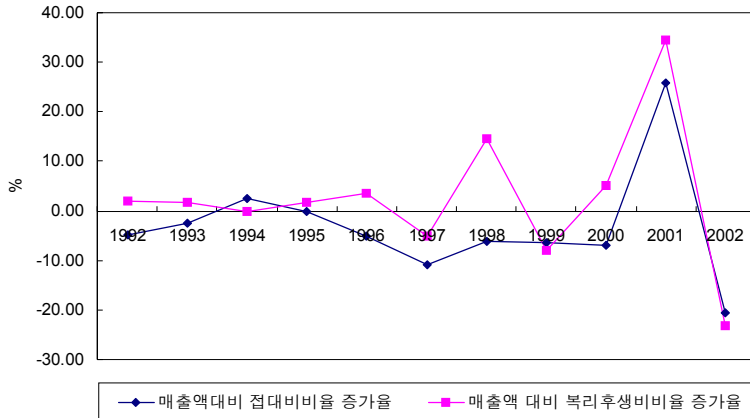
(단위: %)

	매출액 대비 접대비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비율	비율증가율	비율	비율증가율
1991	0.41	-	0.53	-
1992	0.39	-4.88	0.54	1.89
1993	0.38	-2.56	0.55	1.85
1994	0.39	2.63	0.55	0.00
1995	0.39	0.00	0.56	1.82
1996	0.37	-5.13	0.58	3.57
1997	0.33	-10.81	0.55	-5.17
1998	0.31	-6.06	0.63	14.55
1999	0.29	-6.45	0.58	-7.94
2000	0.27	-6.90	0.61	5.17
2001	0.34	25.93	0.82	34.43
2002	0.27	-20.59	0.63	-23.17

[그림 VI-5] 접대비비율 및 복리후생비비율 추이



[그림 VI-6] 접대비비율증가율 및 복리후생비비율증가율



복리후생비의 변화가 접대비지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는데 분석에 사용되는 변수의 표본통계가 <표 VI-5>에 나타나 있다. 앞 절에서 사용한 표본에서 복리후생비의 값이 0인 4개의 기업을 제외한 6,281개의 기업을 사용한다.

<표 VI-4> 표본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접대비비율증가율	0.1535192	2.9626928	-0.9934714	215.4991300
공제한도비율증가율	0.0222846	1.0952014	-0.9272309	79.8179779
타기업수	353.7551345	172.4775123	1.0000000	452.0000000
타기업접대비비율평균	0.3376089	0.0998398	0.0193015	1.0187737
복리후생비비율증가율	0.1173870	2.7995067	-0.9946669	172.0750531

주: 표본통계에 사용된 사업체수는 6,281개임(복리후생비가 없는 4개 기업을 제외한 수치임).

<표 VI-6>은 실증분석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앞 절의 분석모형에 복리후생비비율증가율만을 추가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표 VI-5〉 분석결과

변수	M1	M2	M3	M4	M5	M6
상수	0.12032** (2.24)	0.61546*** (4.48)	0.65777*** (4.90)	1.00743** (2.07)	0.98893*** (6.08)	0.65543 (1.33)
손금산입 한도증가율	1.03956*** (32.96)	1.03980*** (32.94)	1.05143*** (33.20)	1.04040*** (32.95)	1.05782*** (33.26)	1.05840*** (33.27)
기업규모	0.01552 (0.22)	0.00129 (0.02)	-0.01193 (-0.17)	0.00125 (0.02)	0.00733 (0.10)	0.00775 (0.11)
어업		-0.58671 (-1.50)		-0.93995 (-1.64)	-0.43218 (-1.10)	-0.10063 (-0.17)
광업		-0.58864 (-0.99)		-0.97089 (-1.29)	-0.50466 (-0.85)	-0.15113 (-0.20)
제조업		-0.51842*** (-3.87)		3.39013 (0.73)	0.17231 (0.82)	-3.34472 (-0.68)
전기가스증기업		-0.56554** (-2.01)		-0.86247* (-1.91)	-0.56049** (-1.99)	-0.28966 (-0.62)
도소매업		-0.54445*** (-2.93)		-0.58218*** (-3.05)	-0.27432 (-1.40)	-0.22290 (-1.07)
운수업		-0.59583** (-2.45)		-0.84449** (-2.20)	-0.26602 (-1.04)	-0.01867 (-0.04)
통신업		-0.58228 (-1.11)		-0.95742 (-1.39)	-0.73212 (-1.39)	-0.39984 (-0.57)
사업서비스업		-0.53766* (-1.80)		-0.84943* (-1.79)	0.66193 (1.62)	1.02167 (1.58)
타기업수			0.00045783* (1.67)	-0.00967 (-0.84)		-0.00881 (0.72)
타기업접대비 지출비율평균			-2.02430*** (-4.30)		-2.85713*** (-4.29)	-3.03748*** (-4.27)
복리후생비율 증가율	0.00781 (0.63)	0.00811 (0.66)	0.00673 (0.55)	0.00801 (0.65)	0.00708 (0.57)	0.00711 (0.58)
R ²	0.148	0.150	0.151	0.150	0.152	0.152

주: *** 1%, ** 5%, * 10%: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함.

복리후생비율증가율을 포함한 본 분석의 결과는 〈표 VI-6〉에서 얻은 결과와 모든 변수에서 추정계수의 부호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

성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복리후생비비율증가율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서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기업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모든 재무제표의 공개 등 투명성을 기본으로 하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본 분석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기업의 경영관련 사항을 시장에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기업의 경우 변칙회계처리의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자료의 입수가 매우 어려우며 존재하는 자료도 신뢰성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VII. 요약 및 정책방향

1. 요약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접대비 및 매출액 현황을 보면 1991~2002년 기간중 접대비지출은 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매출액 평균 증가율인 12%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 보면, 90년대 초반에는 접대비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1997년 급격히 감소하였고 1998년에는 오히려 전년대비 18.39% 감소하면서 증가율이 상당히 둔해졌으나 2002년에 23.57%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재무자료에 의한 상장기업의 접대비비율은 1995년 0.39%이었으나 점차 낮아져 2000년에는 0.27%로 나타났다. 90년대 후반에는 세법상 인정하는 접대비 손금인정한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으므로 기업들도 접대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 기간에 접대비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도 이러한 세제상의 변화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1년에는 접대비비율이 0.34%로 다시 증가하였다가 2002년에는 0.27%로 떨어지는 등 2000~2002년 기간중에는 2001년이 이례적으로 접대비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는 손금인정한도와 관련된 세제상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 접대비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접대비지출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기업의 매출액 증가세가 둔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유흥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업과 주점업의 최근 현황을 보

면, IMF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이전인 1994~1997년 기간에 해당 업종의 사업체수 증가율이 전산업 사업체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초기인 1998년에는 일반음식점업 및 주점업은 전산업 사업체수 감소율보다 적은 폭으로 감소한 반면 주점업은 전산업 감소율보다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증가율에 있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 2001년 기간에도 주점업의 경우 전산업 사업체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2년에는 주점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31%로 199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종사자수 증가율 역시 사업체수의 증가율과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점업 종사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에 2.28%로 1997년(2.07%)보다 그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으므로 종사자수로 판단할 때, 전 산업에서 주점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1997년 이전보다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흥산업 규모의 변화와 접대비 관련 세제개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흥산업으로 주점업만을 사용한 경우, 일반음식점업만을 사용한 경우 및 주점업 및 일반음식점업의 합계를 사용한 경우를 각각 고려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음식점업이 주점업보다 접대비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더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흥산업과 접대비 지출비율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기 위해서는 유흥산업을 나타내는 변수로 종사자비중이 사업체비중보다 더 적합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차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사업체비중과 접대비비율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주점업이 가장 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점업 사업체비중의 경우 시차를 고려하면 접대비비율과 유흥산업 규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유흥산업의 규모에 대한 접대비비율 증가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수행한 회귀분석에서는 주점업의 사업체비중 증가율에 대하여 1년의 시차를 가지고 접대비비율증가율이 정(+)의 관계를 나타내며 통계적으로도 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 결과이지만 유흥산업의 다른 범위를 사용한 경우와 다른 변수를 사용한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크지 않아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접대비 관련세제 개정의 결과인 손금산입한도의 변화율이 접대비비율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에는 손금산입한도증가율 외에 동종 업종내 타기업 수와 타기업 접대비비율의 평균값, 업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기업규모의 더미변수만을 포함한 회귀분석에서는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접대비비율증가율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으며 추정계수도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손금산입한도증가율의 경우 모든 분석모형에서 접대비비율증가율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손금산입한도의 증가폭이 커질수록 접대비비율의 증가폭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조정하는 조세정책이 기업의 접대비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의 특성 때문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타기업접대비지출평균은 접대비의 경쟁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이며, 접대비비율 증가율과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 모형 3의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타기업수가 증가할수록 접대비비율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동종업종 내에 접대비에 대한 경쟁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10% 수준에서 유의하다. 업종

더미 변수의 경우 도소매업, 운수업, 전기가스증기업 등의 접대비비율 증가율이 비교대상인 건설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회귀분석 모형에 복리후생비지출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복리후생비비율증가율은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서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접대비를 지출하는 기업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변칙회계처리의 가능성은 소규모 기업이 상장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나 분석대상이 기업공개 의무가 있는 상장기업이므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정책방향

가. 중·장기적 정책방향

접대비 손금한도는 기본금액과 매출액 기준 금액의 합계로 이루어지며, 1995년 세법개정시 처음으로 매출액 규모별 차등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손금산입 한도의 산출방식이 기본적으로 변경되었다. 1997년 개정 이후 2000년까지 손금산입 한도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었으므로 세법개정에 따른 손금한도액 축소 효과를 각 매출액 단계별로 분석하면, 매출액 규모가 1조원 이상인 경우 접대비 지출액 손금산입 한도가 1995년 대비 약 78% 축소되었으며, 10조원 이상인 경우 약 80% 정도 축소되었다.

접대비비율은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경우 1991~1996년 기간 동안 0.25~0.26%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1997년과 1998년은 0.21%, 0.17%로 상당히 낮아졌다. 이 시기는 세제상 접대비 손금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시작한 시기지만 IMF 경제체제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므로 세제개정의 효과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접대비비율은 2001

년, 2002년에는 다시 조금씩 증가하여 0.19%, 0.2%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재무자료 중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추세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접대비비율이 전반적으로 『기업경영분석』에 의한 자료보다 높다. 1991~1996년 기간에 0.37~0.41% 수준이던 것이 1997년에 0.33%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며 2000년에 0.27%까지 떨어졌으나 2001년에 다시 상승하였다. 전반적인 추세는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상장기업 자료의 결과가 유사하나 상장기업의 경우 2002년에 다시 접대비비율이 0.2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손금한도초과율이 70%를 넘는 기업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5년 3.25%에서 1999년에 11.44%로 증가하였고 2000, 2001년에는 19.59%, 20.95%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접대비비율이 감소추세를 보이는 기간에도 접대비손금한도초과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은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접대비비율이 전반적으로 90년대 초반에 비해 낮아졌으나 손금한도초과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접대비의 증가추이를 관찰하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보일 경우 손금인정 한도액의 점진적 축소를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유흥산업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제를 고려한다면 기업의 접대비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유흥산업과 접대비지출 사이에 높은 수준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유흥산업의 축소를 위해서는 접대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세제상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세제개편의 결과로 나타나는 손금산입한도증가율과 접대비비율증가율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다는 회귀분석의 결과로부터 기업의 접대비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제상으로는 손금산입한도의 축소가 정책당국이 취해야할 정책방향이라는 정책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다.

나. 단기적 정책대안

여기서는 그동안 접대비와 관련하여 제시되고 논의되었던 구체적 방안을 소개하고, 각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정책방안의 선택시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사항 등을 논의한다.

1) 특정업소에서의 지출에 대한 손금불인정

접대비는 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한도에서 손금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나친 접대비 지출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업이 기술개발 등을 통한 제품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과도한 접대행위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접대행위의 불건전한 의도에 있다고 하겠다. 불건전한 접대행위들은 대부분 고급·사치성 업소 등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과소비를 조장할 뿐 아니라 불공정한 경쟁의 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고급·사치성 업소에서의 접대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유흥주점 또는 골프장 등과 같이 업무가 수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특정 업소에서의 접대행위를 손금불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본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특정업소에서의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나 유흥주점, 골프장 등 특정업소의 선정기준과 해당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시비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특정업소(예: 유흥주점) 범위의 선정과 관련하여도 소모적이고 끝없는 논쟁이 예상되며, 오히려 여러 가지 형태의 변태영업을 초래할 소지도 있으므로 정책으로 활용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업무와의 유관성 검증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접대비로 기업이 처리한 부분에 대해 접대행위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제4장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75달러 이상의 접대비 지출인 경우 접대비지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증빙자료에는 접대금액, 시간, 장소, 사업목적 및 사업관련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접대장소에는 반드시 접대하는 사람 또는 종업원이 참석하여야 하며, 접대받은 사람의 직업, 이름, 직위 등도 기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미국은 손금인정액에 대한 규정보다는 업무와의 관련성 검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3년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 지출목적, 지출자, 상대방, 금액, 장소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는 접대비 지출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 하겠다. 2004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 중 50만 원 이상의 지출에 대하여는 업무와 유관한 지출이라는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본 방안은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 확보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불필요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록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변칙적인 회계처리 및 영수증처리 등이 예상되므로 본 대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접근방법이 변화해야 한다. 현재는 접대비지출에 대한 세무조사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접대비 항목에 대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접대비지출을 억제하면서 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특히 업무유관성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가 강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징세당국의 입장에서

는 증가되는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접대비지출의 일정비율만 손금인정

접대비 지출의 사적용도 사용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계산된 한도액 중에서도 일정비율만을 손비로 인정하여 비도덕적이고 불필요한 접대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전까지 접대비 지출액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 오다가 1986년부터 지출액의 80%만, 1995년부터 50%만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일체의 접대비 손금산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소규모의 기업에서도 일정액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한해 일정 부분만을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금한도가 기본금액과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의해 산출되는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세제상 접대비의 지출을 축소하고자 하는 유인이 적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방안을 채택한다면 현재 세제상 인정하고 있는 손금산입한도의 규모에 대한 조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세청, 『법인세 신고안내』, 2003. 1.
_____, 『개정세법해설』, 2003.
- 박기백·손원익, 『접대비모형과 실증분석』, 『재정논집』, 제18권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3. 9.
- 손원익, 『접대비 관련 세제의 정책방향』, 정책보고서 97-17, 한국조세연구원, 1997.
_____, 『접대비 관련 세제와 지출현황』, 『재정포럼』, 2002년 12월호, 한국조세연구원.
- 여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매매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2003.
- 영화조세통람, 『2003 조세편람』, 2004.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잠정보고서』, 2002.
_____, 통계DB,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한국신용평가, 『재무제표』, 각 연도.
- 山本守之, 『交際費の異論と實務』, 稅務經理協會, 2002.
- CCH, Australian master tax guide, 2003.
_____, U. S. master tax guide, 2003.
- IRS, Travel, Entertainment, Gift, and Car Expenses, Pub 463, 2003.

(뒷면)

작성요령

1. 본 명세서는 지출일자 순으로 작성하되,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제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작성합니다.
2. 접대자의 부서명(③) 및 성명(④)란은 접대업무를 수행한 당해 법인의 임직원 소속 부서 및 성명을 기재하며, 접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성명(④)란은 주된 접대자 “○○○의 ○인”으로 기재합니다.
3. 접대상대방의 상호(⑦) 및 사업자등록번호(⑧)란은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비사업자인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접대상대방이 2인 이상인 경우 성명(⑩)란은 주된 접대상대방 “○○○의 ○인”으로 기재합니다.
5. 접대목적 또는 지출사유(⑪)란은 업무와 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지출사유를 기재합니다.

부록 II. 접대비 고시 관련 주요 문답사례

□ <질의 1> 대상 접대비를 50만원 이상으로 하게 된 배경은?

- 2003. 6. 18 세정혁신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설명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 접대비를 30만~50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음.
- 현재 내수가 크게 위축되어 있고, 제도도입 초기 기업의 부담과 소비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건당 50만원 이상』으로 결정하게 된 것임.

□ <질의 2> “건당 5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봉사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 지출증빙 기록·보관이 되는 “건당 50만원 이상”인 접대비는 부가가치세 및 봉사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함.
- 사례: 음식대 46만원(부가세 4만 6천원 별도)을 접대목적으로 지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50만 6천원이므로 지출증빙 기록대상임.

□ <질의 3> 건당 50만원 이상 거래의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이 매우 간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들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접대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록·보관방법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나
 - 기업주의 사적비용 등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들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영수

증을 소액으로 나누어 발급받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이와 같은 변칙적인 업무와의 관련성 입증의무 회피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판정
 -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변칙처리 사례 예시》

- 접대자가 여러 개의 법인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
- 접대금액의 일부를 외상처리하고 나중에 잔액을 결제하는 방법
- 접대금액의 일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방법
- 접대금액을 같은 부서 직원의 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 등

□ <질의 4> 업무관련성을 간편하게 기재하는 방법은(예시)?

- 법인이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접대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 그 외의 기업들은 정규영수증의 뒷면이나 이를 첨부한 용지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보관하면 됨.

매 출 전 표	
www.kmps.co.kr	
단말기번호(10182088) 전표번호(0312101122)	
회원번호(CARD NO) 4265-8600-2400-0001	
카드종류	유효기간 거래일자(Date)
국민비자기업	09/07 04/13 20:10:22
거래유형	품 명 취소시 원 거래일자
신용구매	
결제방법	판매금액 500,000
일시불	부가가치세 50,000
매입처	봉 사 료
KMPS	합계(TOTAL) 550,000
전표매입사	승인번호(Approval No)
국민	30006685
가맹점명	가맹점번호
서울단란주점	00009750001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홍길동	211-01-01234
서울 강남구 신사동 00	
위장가맹점 고발안내	서명(SIGNATURE)
☎ (02) 2011-0777	
회 원 용	
접 대 자	영업부 김 세 일
접대상대방	종로상사(주) 101-81-12345 구매부 이 영 호
접대목적	pc모니터(No.1234) 계약건 관련 팀미팅후 구매부 직원 접대

□ <질의 5> 지출증빙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 현재도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지만(법인통칙 4-0...2),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이에 더하여 접대자 및 접대 상대방 인적사항, 접대목적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한 것으로
 - 법인이 작성한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접대비 지출증빙』도 5년간 보관하면 되고 법인세 신고시 과세관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음.

□ <질의 6>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불이익은?

-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한하므로(법인세법 제19조)
 -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에 대하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또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사람(이를 지출한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담함.
 - *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기업주·임원)나 배당소득세(주주)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질의 7> 접대목적과 접대 상대방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접대비 지출이 불가피한 기업현실을 도외시한 조치가 아닌지?

- 기업이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 현실은 인정됨. 아울러, 이번 조치가 업무상 필요한 접대를 막으려는 것

은 아니며,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지금까지 세법상 한도내 금액에 대하여는 관행상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 세무회계뿐만 아니라 기업회계에 있어서도 접대비를 포함한 법인의 모든 지출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전제되어야 비용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는 바, 이번 조치는 과거 우리의 부적절한 관행을 국제관례,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맞게 고치려는 것임.
- 정부는 그동안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축소 조정해 왔으며,
 - 2000 사업연도부터는 증빙 없는 불건전한 기업비용의 지출을 조장하는 기밀비 제도를 폐지하였던 바, 당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대다수의 기업이 이에 잘 적응해오고 있음.
 - 최근 다수의 기업이 왜곡된 접대문화 개선 등 투명경영 실천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 대하여도 대다수 기업은 잘 적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질의 8> 이번 조치가 특정 업종의 내수를 위축시키는지?

- 이번 조치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하여 법인의 부당한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며, 사업상 필요한 정상적인 접대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내수위축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일시적으로 다소간의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업계가 언제까지 비정상적인 접대에 의존하여 영업할 수는 없는 것이며, 건전하고 정상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임.

□ <질의 9> 제도도입 초기임을 감안할 때 기업부담 및 내수위축 방지 측면에서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의도는 없는지?

- 세무회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회계원칙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기준은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 금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모든 지출액에 대하여 사업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도도입 초기 기업의 부담 등을 감안하여 “건당 50만원 이상”으로 결정한 것임.
- 제도도입 논의과정에서 기준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더 낮추거나 없애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임.

□ <질의 10> 지출증빙 기록이 외부로 공개될 우려는 없는지?

- 접대비 지출증빙 서류는 사업기밀이 포함된 다른 문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내부문서로서 외부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 내에서 법인 스스로 잘 관리하면 되는 것임.
- 다만, 세무조사과정에서 접대비 지출을 포함한 기업의 영업상 비밀 등에 접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인 바, - 국제기본법 §81의8, 국가공무원법 §60, 형법 §127 등에 의하여 납세자의 비밀이 보호되도록 법적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어 지금까지 문제가 된 사례가 없었음.

□ <질의 11> 접대비 기록·보관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 증가는?

-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법인이라면 비용지출의 정당성에 대한 내부 통제목적 및 회계감사예의 대비 등을 위하여 - 지출 품의서류, 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당연히 보관하고 있어

야 하는 것이며, 이번 조치로 인하여 새롭게 업무부담을 지는 것은 아님.

- 아울러, 사업관련성 입증방법에 있어 증빙 뒷면 등에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접대하였는지를 간편하게 기재하도록 하여 기업의 추가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음.

□ <질의 12> 비사업자인 접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 이번 고시의 시행에 있어 비사업자인 접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 이를 이용하여 지출내용의 진실성과 사업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 사업과 관련된 접대 상대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비사업자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것임.
-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른 증빙 등에 의해 접대 상대방과 업무관련성이 입증될 때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 13> 상품권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보관방법은?

- 접대목적으로 취득한 상품권 가액이 50만원(분할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판단) 이상인 경우에는
 - 접대 상대방별 상품권 가액이 5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모든 접대 상대방에 대한 지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함.
 - * 상품권은 통화대용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거래상대방별로 분산처리가 용이하므로 모든 지출내역을 기록하여야 함.

□ <질의 14> 현물 구입·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보관방법은?

- 상품권과 달리 현물에 의한 접대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공 받은 회사별로 50만원 이상인 거래처에 대하여만 지출증빙 기록·보관대상이 됨.
 - 사례: 개당 10만원짜리 선물세트를 A거래처에 5개, B거래처에 3개, C거래처에 1개, D거래처에 1개를 제공한 경우에는 A거래처만 작성 대상임.
 - 다만,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관계 없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법인이라면 건당 50만원 미만 접대비라 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은 입증해야 하므로 내부품의서, 지출목록 등은 보관하여야 함.

□ <질의 15> 다수 인원 에 대한 접대시 지출증빙 기록방법은?

- 접대 상대방이 여러 거래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
 - 초청자 명부 등 내부서류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참석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 거래처 “○○○ 외 49명”으로 기재하여도 인정 가능함.

□ <질의 16> 해외 접대비에 대한 지출증빙 기록·보관방법은?

- 현행 접대비 규정상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라 하여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도 당해 접대비 고시의 적용대상이 됨.
 - * 해외접대비에 대한 우대(전액 손금산입) 규정은 1995년 12월 말 삭제
 - 따라서 해외에서 접대비를 지출(해외 바이어를 국내에서 접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법인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뒷면에 접대 상대방, 접대목적 등을 기재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

번호는 파악·활용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 가능함.

- <질의 17> 자가 생산제품 현물접대비 지출증빙 기록방법은?
 -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접대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 수취의무는 면제되나(법인세법 시행규칙§20②)
 - 동 제품의 시가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고시에 의하여 지출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 <질의 18>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정규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수취함에 따라 손금부인되는 경우에도 당해 지출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지?
 - 법인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법인세법 §25②),
 - 동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손금부인 외에 추가로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게 됨.
 - 따라서, 간이영수증에 의하여 지출한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도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여야 함.
 - * 만일 정규증빙 미수취로 손금부인한 접대비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입증의무를 면제할 경우, 정규증빙을 수취하고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상여처분되는 거래와의 형평에 어긋남.

- <질의 19>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에 따라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지?
 -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는 건당 50만원 이상 지

출하는 법인의 접대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 개인사업자가 지출하는 접대비는 당해 고시에 의하여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할 의무는 없음.
-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지출하는 접대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하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함.

□ <질의 20>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저녁식사(30만원) 후 주점(40만원)으로 장소를 옮겨 접대한 경우 이를 1건의 거래로 합산하여야 하는지?

- 실질상 1건의 거래를 지출증빙 기록·보관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이를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로 보아 5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 질의내용과 같이 동일한 접대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주점으로 장소를 옮겨 접대한 경우에는 사실상 별개의 지출이므로 이를 합산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님.

□ <질의 21> 비영리법인이 50만원 이상의 접대성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지?

-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다만,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비수익사업 해당분)이 지출하는 접대성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고시에 따른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할 의무는 없음.

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손원익

1996년 과소비와 비자금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을 때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당시 정책당국은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방안이라 판단하여 1997년에 접대비와 관련된 세제의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1997년 세제개편에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점진적으로 접대비지출에 대한 손금산입한도를 축소하는 등 기업의 접대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90년대 초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접대비 관련 세제의 개편에 따른 접대비 지출실태의 변화를 분석하고 접대비지출과 유흥산업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접대비 관련세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접대비지출 실태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기업경영 분석』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상장기업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였고 유흥산업과 접대비지출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접대비 지출은 일반음식점업의 종사자비중이 주점업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더 큰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차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주점업의 사업체비중과 접대비비율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유흥산업의 규모에 대한 접대비비

율증가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한 회귀분석에서는 주점업의 사업체비중증가율에 대하여 1년의 시차를 가지고 접대비비율증가율이 정(+)¹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손금산입한도증가율의 경우 접대비비율증가율과 정(+)¹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손금산입한도의 증가폭이 커질수록 접대비비율의 증가폭도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접대비의 경쟁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타기업접대비지출평균은 접대비비율증가율과는 부(-)¹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쟁관계에 있는 타기업수가 증가할수록 접대비비율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로부터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조정하는 조세정책이 기업의 접대비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Abstract>

Entertainment Expenses and Tax Policy

Wonik Son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tax policy for entertainment expenses in 1997. Tax deduction limit for entertainment expenses was sharply reduced from 1998 to 2000.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ax policy changes on firms' entertainment activ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entertainment industry and firms' spending on entertainment expenses is also examined.

The Data set used for the analysis are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published by the Bank of Korea, financial data for the listed companies by "National Information and Credit Evaluation", and "Report on the census on basic characteristics of establishments" by the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Results from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 that there exists a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with one year lag between firms' spending on entertainment expenses and the ratio of establishments within the industry classified as drinking places to the total number of establishments.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here exist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e of changes in entertainment spendings and the rate of changes in tax deduction limits, and the coefficien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incorporate the competitive characteristics of entertainment

activities the number of firms in the same industry was used as a proxy for entertainment competition. The estimated coefficient implies that as the number of firms within the same industry increases, the rate of changes in entertainment spendings also increases. This result means the existence of entertainment competition among firms within the same industry.

<著者略歴>

孫元翼

美國 William Penn College 經濟學科 卒業
美國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經濟學 博士
美國 University of California-Santa Cruz 客員 助教授
現, 韓國租稅研究院 研究委員

政策報告書 03-10

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2003年 12月 26日 印刷

2003年 12月 31日 發行

著者 孫元翼

發行人 宋大熙

發行處 韓國租稅研究院

11318-71714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

電話 : 2186-2114(代), 팩시밀리 : 2186-2179

登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 및 印刷 상 일 인 쇄

© 韓國租稅研究院 2003

ISBN 89-8191-261-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000 원